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FTA 협정문 및 상품양허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중국의 FTA 사례분석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전 형 진	부 연구위원
정 대 희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관세 분야 분석/집필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관세 이외 분야 분석/집필
전 형 진	부연구위원	대만, 아세안 사례 분석/집필
정 대 희	연구원	자료수집 및 분석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협상을 맺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터키, 브라질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의 FTA가 타결되면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

이 연구는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FTA 협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중 FTA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FTA 협상 전략을 분석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경우 우리나라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협상에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사례는 중요한 협상 지표의 하나로 작용한다. 기존 FTA와 비교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협상 상대국에 특정 사안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국의 기존 FTA에서 상품양허 방식과 농식품분야 민감품목 현황, 민감품목의 양허 유형 분석, 관세쿼터(TRQ), 농산물 긴급관세(ASG), 관세 이외 분야(원산지,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 기술규정 및 표준 등 통관 관련 제도) 등을 농산물 및 농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ASEAN, 뉴질랜드, 칠레, 대만 등 네 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는 그동안 발간된 사례연구에 비해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춰 관세양허뿐만 아니라 원산지, 동식물검역, 농업협력, 지적재산권 등 FTA 협정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한·중 FTA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오 세 익

요 약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FTA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주요 FTA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가운데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ASEAN, 대만, 칠레, 뉴질랜드 등이다. 중국이 이미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한·중 FTA에 대비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FTA 협정문 체계는 대체로 전문, 본문(장), 부속서, 부록, 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무역 분야는 내국민대우, 관세양허(무역구제, 관세쿼터, 관세환급 등 포함), 원산지규정, 수량제한(수입허가 및 수출제한 등), 비관세장벽, 기술 및 표준, 동식물위생, 불공정무역관행, 특정품목에 대한 규율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무역 이외의 분야로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포함), 정부조달,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협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선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FTA 협정문 가운데 농업 또는 농산물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농업관련 주요 분야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 이외에 원산지, 동식물위생, 내국민 대우, 수량제한(수입 및 수출 제한 등), 농업협력, 정부조달, 수출보조 등이다.

2. 관세양허 분야

중국·아세안 FTA(CAFTA)에서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아세안에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 타결에 앞서 농산물 관세를 먼저 낮추는 ‘조기수확프로그램’은 중국이 FTA 협상 최초로 도입하였다. 아세안 신규 회원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경제가 낙후한 국가들에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WTO 비회원국에도 WTO 회원국과 같이 대우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취약 품목과 식량안보상 중요한 곡물과 곡분, 당류 및 유지류와 담배 등은 양허를 제외하거나 고민감품목으로 양허하여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칠레 FTA에서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를 상호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주곡과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동·식물성유지류, 그리고 경쟁력이 낮은 설탕을 양허 제외하고 있다. 칠레는 대부분의 품목을 즉시 철폐로 양허하였지만 밀과 밀가루 등 곡물류와 경쟁력이 낮은 설탕을 양허 제외하였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양국 모두 농업경쟁력이 높은 편이지만 국별 농업상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국만 일방적으로 양허 제외 품목을 허용하는 비대칭적 FTA를 체결하였다.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은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세이프가드(SG)와 양자간 SG 외에 특별농산물 SG(SASM)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 등 SASM 대상인 일부 낙농품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는 당사국 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며, 협정 당사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사항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시장 개방 일정은 포함하지 않은 예비협정이다. 중국과 대만의 ECFA는 중국의 경제적 실익 추구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중국식 FTA의 전형이다. 중국은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분야인 농산물과 인력 이동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적인 통상 협상의 형태를 탈피하였다.

3.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FTA 협상에서 이루어진 시장개방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완전생산물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생산물이 아닌 경우 즉, 역외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이다. 농산물은 완전생산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분석 대상 FTA에서 완전생산물 기준의 경우 식물에 있어서 ‘재배와 수확’이 이루어진 경우와 ‘수확’만 이루어진 경우 등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산동물은 ‘출생과 사육’이 이루어진 경우 완전생산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류 등 축산물에 있어서는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에서 얻은 것이라는 규정과 ‘사육된’ 동물에서 얻은 것이라는 규정이 혼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ASEAN과의 협상에서 출생과 사육 두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세번변경 기준은 HS 2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HS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은 국가별, 품목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분야가 신선 농산물에 비해 HS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 적용 비율이 높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중국·뉴질랜드 FTA).

미소허용 기준은 7~1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미소허용 기준의 농산물에 대한 적용 여부는 협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미소허용 기준을 농산물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누적과 원산지 불인정 공정은 대부분의 협정이 공통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적은 양자 간의 협상에서는 양자누적이 회원국이 다수인 국가 또는 지역 간의 협정에서는 유사누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원산지 불인정 공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반영되는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4. 동식물검역 등 기타 분야

대부분의 협정이 WTO SPS 규정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었다. FTA 체결 당사국 간의 SPS 관련 분쟁,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을 위해서는 공동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의 활동은 정보교류, 국제적 논의에서의 협력, 문제(분쟁) 발생 시 협의 등이 대부분이다. 검역조치의 강화 또는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다.

따라서 일부 FTA 협정에는 SPS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중국·대만, 중국·ASEAN등). 중국·칠레 FTA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분석 대상 FTA 사례에서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는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상품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알코올성 음료나 차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WTO 농업협정 수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분야 협력은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ASEAN과의 협정에 농업개발, 메콩강 개발 등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와의 협정에서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상품 분야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WTO 제3조가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해 자국산과 같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은 WTO 협상에서도 일부 회원국들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FTA 협상에서도 정부조달 분야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조달을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5. 시사점

한·중 FTA와 관련하여 국내 농업부문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과 경쟁력 변화 등을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취약품목과 식량 안보상 중요품목 등에 대한 특별취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 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나라는 농업계의 우려와 함께 식

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반영되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환경 보전적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양국의 농업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경쟁보다는 협력관계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제시하고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중국도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국가적인 동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시장 가격 급등으로 식량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중국이 FTA 협정을 체결한 어느 국가보다도 시장이 넓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농업부문에서 중국의 조기수확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선제적인 양허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자세가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협상 타결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현행 관세 수준에서도 수입이 많거나 증가하는 품목, 또는 수입 후 중간재나 원자재로 사용되어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을 과감하게 양허하는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특별농산물 SG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중간점검을 명문화함으로써 이행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은 상호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 대상국의 성격에 따라 농촌발전, 농업기술, 농업정책 등 상호 보완적인 분야를 결정하여 시장개방 효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 원산지 기준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경우에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표현이 채택되어 있다. 농산물 순수입국 입장에서는 ‘수확된 것’보다 강화된 개념의 ‘재배되고 수확된’의 개념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산동물의 경우 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경우만 원산지 상품으

로 인정된다. 그러나 육류, 유제품 등 축산물의 경우에는 ‘당사국에서 사육된(raised) 동물로부터 획득한 제품’ 또는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로부터의 상품’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출생 및 사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와 사육에 국한하는 경우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출생 및 사육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세번변경 기준은 HS 2단위 변경을 기본으로 하는 NAFTA 방식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번변경 기준은 HS 2단위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일부 가공식품 등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4단위나 6단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소허용 기준의 농산물에 대한 적용 배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으나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일부만 배제되었고 EU와의 협상에서는 배제되지 않았다. 한·중 FTA 협상에 농산물에 대한 미소허용 기준은 우리나라 가공식품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SPS 협정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같이 WTO SPS 규정 준수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 협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상품목 제한, 높은 수준의 조달계약 기준액의 하한선 설정,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 등이 요구된다.

학교급식의 증가, 지역 농산물 소비 운동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농산물 거래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의 예외 조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WTO 협정에 따라 수량제한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중국 등 곡물 수출국과의 협상에서는 수출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두어 다시 한 번 수량제한 금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특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지리적표시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Negotiation Strategies of FTA Counterpart Countries: China

Korea already finished FTA negotiations with 45 countries including the U.S., EU, ASEAN and India. Korea also try to make a conclusion in some other FTA negotiations with Canada, Mexico, Colombia, Australia, New Zealand, and Turkey. Therefor remaining major economies scheduled to negotiate will be China, Japan, Russia, and Brazil. In the short run FTA negotiations with China and Japan will be started or resumed. FTA negotiations with Turkey started from 2010.

Some country's outcome of FTA negotiations may affect to following negotiations and it is important to analyse negotiation partners' previous cases.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China's outcome of previous FTA and provide information for Korea • China FTA negotiations.

China provided trade opportunities to ASEAN and Taiwan under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political and security measures. However, China tried to protect some agricultural commodities related to food security and rural economy including grains, sugar, oilseed, and tobacco. On the other hand, China kept a defensive position in the negotiation with Chile and New Zealand. China has exception lists in China • Chile agreements for some agricultural commodities related to food security and rural economy including sugar and animal and vegetable oil while Chile conceded almost all items. China also has exception lists in China • New Zealand negotiations.

Rules of origin are key factors to achiev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such as FTAs. Qualifications of originating good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wholly obtained and the other is not wholly obtained, i.e. goods produced with imported materials. In the case of China, vegetable goods harvested in one country are treated as wholly obtained. Animal products and live animal are accepted to be wholly obtained when

both born and raised or when raised. In the case of China · Taiwan and China · ASEAN FTA born and raised criterion is applied. Raised criterion is accepted in the case of China · Chile and China · New Zealand FTA.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d value added criterion are in general applied for the goods produced with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the criterion of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HS 2 digit level(chapter) is widely applied and HS 4 or 6 digit level is used as supplements. Regional value added of 40 to 50 percent is a minimum for the acceptance as originating goods. De minimis of 8 to 10 percent and bilateral cumulation are accepted in China's FTA.

Korea needs to maximize exceptions of market opening for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 negotiation with China. China's early harvest program can be a benchmark for Korea to present an active position and preserve sensitivities. Various supplementary measures against possible negative impacts from coming FTA negotiations need to be introduced in the agreements. Cooperation programs in agricultural and rural areas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one of FTA policy strategies.

Korea needs to keep a strict rules of origin for fresh agricultural products. Standards of planted and harvest for vegetable products and born and raised for animal products are strongly requested to be maintained as Korea's position. For the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HS 2 digit level will be better to protect fresh products while HS 4 to 6 digit level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for processed food. Exceptions of de minimis application need to be introduced for agricultural products. Due restrictions on non tariff measures including embargo and subsidies also need to be included in FTA. Special treatment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requested i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Researchers: Myong-Keun Eor, Sei-Kyun Choi, Hyung-Jin Jeon,
Dae-Hee Chung
E-mail Address: myongeor@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4. 선행연구 검토	4
5. FTA 협정의 구조	7
6. 주요 연구내용	15

제2장 관세양허 분야 FTA 협정

1.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	17
2. 중국·ASEAN FTA(CAFTA)	23
3. 중국·칠레 FTA	45
4.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52
5. 중국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55

제3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59
2. 중국·칠레	84
3. 중국·대만	89
4. 중국·아세안	95
5. 중국·뉴질랜드	100
6. 중국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의 특징	107
7. 협상에 대한 시사점	109

제4장 동식물위생 조치

1. 동식물위생 조치의 개념	111
2. 중국·칠레	112
3. 중국·대만	113
4. 중국·아세안	113
5. 중국·뉴질랜드	114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115

제5장 기타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117
2. 농산물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119
3. 농산물의 범위	121
4. 농업협력	123
5.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126
6. 정부조달	129
7. 수입 및 수출 제한	130

표 차례

제2장 관세양허 분야 FTA 협정

표 2- 1.	중국·뉴질랜드 FTA 농산물 양허 계획	18
표 2- 2.	중국·뉴질랜드 FTA(중국의 양허안)	19
표 2- 3.	중국·뉴질랜드 FTA(뉴질랜드 양허안)	20
표 2- 4.	중국·ASEAN FTA의 추진과정	24
표 2- 5.	기본협정문(2002. 11. 4.)의 구성	25
표 2- 6.	상품무역 협정문(2004. 11. 29.)의 구성	26
표 2- 7.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예외 상품	27
표 2- 8.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간의 특정상품	28
표 2- 9.	EHP 상품 관세철폐 계획(중국, 아세안 6개국)	28
표 2-10.	EHP 상품 관세철폐 계획(아세안 신규회원국)	29
표 2-11.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계획	30
표 2-12.	중국의 대태국 농산물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31
표 2-13.	CAFTA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대태국)	32
표 2-14.	중국의 대태국 농산물 양허안 일반품목 중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33
표 2-15.	중국의 대태국 농산물 양허안 중 민감품목 내역	34
표 2-16.	CAFTA 태국의 농산물 양허안(대중국)	38
표 2-17.	베트남의 일반품목 관세철폐 계획	39
표 2-18.	베트남의 대중국 농산물 양허안	40
표 2-19.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일반품목 관세철폐 계획	41
표 2-20.	캄보디아의 대중국 농산물 양허안	42
표 2-21.	중국·칠레 FTA 중국 양허안(HS-2단위)	46
표 2-22.	중국·칠레 FTA(칠레의 양허안)	49
표 2-23.	중·대만 ECFA 조기수확 프로그램(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53

제3장 원산지 규정

표 3-1. 원산지 판정 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62
표 3-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결정 기준	65
표 3-3.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 완화 기준	66
표 3-4. 협정별 부가가치 기준의 특성	75
표 3-5. 주요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 기준	77
표 3-6. 협정별 원산지 완화 조항의 특징	81
표 3-7. 지역별 원산지 조항의 주요 특징 비교	83
표 3-8. 중국·칠레 FTA에서 품목 특정 원산지 기준(부속서 3)	88
표 3-9. 중국·뉴질랜드 FTA의 농산물 원산지 기준	104

제4장 동식물위생 조치

표 4-1. SPS 요약	115
---------------------	-----

제5장 기타

표 5-1. 지리적 표시 요약	119
표 5-2. 수출보조 요약	121
표 5-3. 협력분야 요약	125
표 5-4. 내국민대우 요약	128
표 5-5. 정부조달 요약	130
표 5-6. 수출/수입제한 요약	131

그림 차례

제3장 원산지 규정

그림 3-1. 주요 협정별 세번변경 기준의 종류	72
----------------------------------	----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미국, ASEAN, EU 등 거대경제권 국가는 물론 칠레, 인도, EFTA, 페루 등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또한 중국, 일본,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등 또 다른 거대경제권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나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 및 정치·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FTA 협상 가운데 이미 타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가는 북미 지역의 미국(2007년 4월 타결), 캐나다(협상중. 2005년 7월 개시), 멕시코(협상중. 2006년 2월 개시), 남미 지역의 칠레(2002년 10월 타결), 페루(2010년 8월 타결), 콜롬비아(협상중. 2009년 12월 개시), 오세아니아 지역의 호주(협상중. 2009년 5월 개시), 뉴질랜드(협상중. 2009년 6월 개시), 아시아 지역의 아세안 10개국(2006년 4월 타결), 인도(2008년 7월 타결),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협상중. 2008년 7월 개시), 유럽 지역의 EU 27개국(2009년 7월 타결), EFTA 4개국(2005년 7월 타결), 터키(협상중. 2010년 4월 개시)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중단), 브라질, 러시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의 FTA가 타결되면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 러시아와의 협상은 러시아의 국내 경제체제 변화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과 브라질 등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신선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국가로 다른 나라와 상반된 입장에서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들 FTA 추진 대상국의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 전략 수립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호주 FTA의 사례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 예외조치 내용, 양허 전략 등을 분석하여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에 대응한 선례가 있다.

FTA 협상에 있어서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사례는 협상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FTA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협상 상대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 이후에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EU, 캐나다, 호주 등은 한·미 FTA 협상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시장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FTA 체결이 증가할수록 협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수행된 농업부문 FTA 관련 정책연구는 협상 대상국의 농업 및 농산물 무역, 경쟁력, 우리나라와의 교역 잠재력 등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파급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협상 대상국의 FTA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체결한 FTA 협정문 및 상품 양허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향후 추진될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중국의 FTA 체결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양허 요청 및 제외 등)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기존 FTA에서의 상품양허 유형, 농식품부문 민감품목 현황, 민감품목의 양허유형 분석, 관세쿼터(TRQ), 농산물 긴급관세(ASG), 관세 이외 분야(원산지,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 기술규정 및 표준 등 통관 관련 제도) 등을 농산물 및 농업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협상에 대비한 잠정적 협상의 틀, 방향 등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주요 국가 가운데 경제 규모가 큰 곳은 중국, 일본, 터키, 러시아, 브라질 등이다. 이들 국가 가운데 단기적으로 협상이 추진될 국가 또는 2010년에 협상에 들어간 국가는 중국, 일본, 터키 정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을 주요 분석 대상국으로 하였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FTA 체결 시 경제 및 농업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산물 교역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나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관세동맹(MERCOSUR) 국가들은 MERCOSUR 형성 이후 다른 나라와의 FTA 사례가 없으며, 러시아도 FTA 체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은 연구 기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4건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 지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중국의 경우 ASEAN, 뉴질랜드, 칠레, 대만 등 네 가지 사례를 선

정하였다. 대만은 중국이 가장 최근에 체결한 협정이고 우리나라의 교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연구는 분석대상 국가가 체결한 FTA를 사례별로 협정문을 수집하여 관세분야와 비관세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협정문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분석 대상국 전문가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하였고 국내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시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법무부, 2003)에서는 FTA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을 WTO 규정과 비교하여 해설하고 있다. FTA 사례로 NAFTA 규정을 분석하였다. 양허 내용을 다루기보다 규정을 WTO 규정과 비교, 해석하고 있다. WTO 협정과 FTA의 규율 대상을 비교 분석(FTA는 WTO에 비해 정부조달, 환경, 노동,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하였고 WTO 규정에서 FTA에 대한 규율(예외조치 및 이에 대한 운용의 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FTA 상품무역 규율 부분에서 내국민대우 예외,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제한, 비관세장벽의 규제, 기술규정 및 표준, 위생 및 검역조치,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 관행 규제, 특정 품목 무역의 규율,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 등에 대해 규정 및 범위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 및 내용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상품무역 이외의 분야로 서비스, 투자, 기타 특정 사안에 대한 규율 등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최세균 외, 2006)에서는 미국이 맺은 FTA 가운데 NAFTA, 미국·호주 FTA, 미국·칠레 FTA 등 세 가지 사례에서 농산물의 관세양허 분야를 분석하였다. 관세양허 방식, 양

허 방식별 농산물 분포, 주요 품목의 양허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설탕, 낙농품, 담배, 아스파라거스 등 일부 채소류, 채소 및 과일 주스(토마토 주스 등)가 주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설탕에 대한 시장보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최세균 외, 2006)에서는 주요 FTA의 농산물의 관세양허, FTA 무역규범 등을 분석하였다. 무역규범 분야는 분쟁해결절차, 지적재산권, 투자규범, 원산지 규정, 동식물검역 등이 FTA에서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 개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농산물 관세양허 부분은 중국·ASEAN FTA, NAFTA, 호주·미국 FTA, 미국·중미국가 FTA(CAFTA), 미국·칠레 FTA, 캐나다·칠레 FTA, EU·멕시코 FTA, 일본·멕시코 FTA 등을 사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ASEAN FTA와 NAFTA 분석 부분은 본 연구에 직접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타의 사례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과 다르나 연구 내용 및 방법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정인교 외, 2007)에서는 FTA 원산지기준의 내용,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등을 검토하고 한·미 FTA 원산지기준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산지 기준 적용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TA 사례별 농산물 분야 원산지 분석을 위한 이론 및 연구 내용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미 FTA SPS 협상 참고자료』(농림부, 2006)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SPS 분야의 협상 전략을 위한 참고자료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FTA 협상의 SPS 분야 협정문을 소개하고 미국의 사례를 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사례 분석은 미·스위스, 미·호주 FTA를 중심으로 미국의 SPS 협상 관련 기관의 관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APHIS, 의회 등). 본 연구에서 SPS 분야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틀 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가의 자료나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일본·멕시코 FTA의 일본 농수산물 개방수준 검토」(송송이, 2005)에서는 품목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 나누어 농산물 개방 수준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간 관심품목이던 돼지고기의 부위별 시장의 개방 수준을 분석하였다.

「중국·ASEAN FTA의 상품양허 내용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중호, 2005, 허덕진 2005)에서는 상품양허의 구조,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내용 등을 산업 전반에 산업군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농식품 분야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산업별 또는 품목군별 분석으로 개괄적 설명 또는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가 있다.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송송이, 2005)에서는 NAFTA, EU, AFTA, 한국·칠레,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EFTA·싱가포르 FTA의 원산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FTA 협상 대상국별로 수행된 연구보고서에서 협상 대상국의 FTA 사례를 분석한 것이 있다. 「농업부문 FTA 파급 영향 및 대응 방안」(최세균 외, 2006)에서는 캐나다의 FTA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캐나다·미국 FTA, 캐나다·칠레 FTA, NAFTA 등에서의 농산물 분야 양허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중 FTA 영향분석」(어명근 외, 2006)에서는 중국·ASEAN FTA, 중국·칠레 FTA에서 농업분야 협상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인도 FTA 영향분석」(강혜정, 2006)에서는 인도가 맺은 FTA 가운데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와의 FTA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사례 연구는 상품양허 가운데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분석된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품양허 분야를 내국민대우 예외,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제한, 비관세장벽의 규제, 기술규정 및 표준, 위생 및 검역조치,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 관행 규제, 특정 품목 무역의 규율,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 등으로 확대하여 분석(분석 대상 규율이 존재하는 경우)하였다. 상품양허 이외 분야 가운데 지적재산권을 비롯하여 농산물과 관련된 사안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 사례가 선행 연구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나 새로운 사례와 분석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5. FTA 협정의 구조

5.1. FTA 협정의 구성

FTA 협정문 체계는 대체로 전문(Preamble), 본문(장, 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서한(let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의 전체 구조가 유사하더라도 본문의 구성은 협정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협정 당사국이 합의한 내용은 관련 주제별로 특정한 장(Chapter)에 정리하게 되며 각 장은 핵심 내용, 정의 등을 제시하는 본문과 관련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 주석 등으로 구성된다.

부속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세양허 계획 등과 같이 내용이 방대한 것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FTA 협상에서 통상장관 등 정부 당국자 간의 서한도 협정문의 해석을 위한 내용이나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2. 협정의 주요 내용

5.2.1. 상품 관련 분야

가. 상품무역

FTA 회원국은 각각의 관세 감축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공산품, 농림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 나가게 된다.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교역 관련 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제도 발효 전에 공개하도록 하거나 상품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양국 간 협의채널로서 상품위원회 혹은 무역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협의를 원활히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협정 이행 시 회원국은 단계별로 상품분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나가게 된다. 관세양허 분야는 관세의 즉시철폐를 비롯한 조기 철폐,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현행관세 유지나 양허 제외 등 예외적 조치 등으로 세분된다. 수확기에 가격변화가 민감한 일부 농산물의 경우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수입국의 수확기에는 관세를 장기에 걸쳐 철폐하거나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개방에 있어서 취약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농산물은 관세의 장기 철폐, 관세양허 제외, 계절관세 등 관세철폐의 일반적 원칙이라 할 수 있는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3항: 합리적인 이행기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년 이내이어야 한다’의 예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 농산물에 대한 상품양허 분야는 관세쿼터(TRQ), 농산물긴급구제조치 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양허방식 또는 시장개방 보완조치가 적용된다.

나. 원산지 기준

FTA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 수출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회원국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완전생산물,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또는 주요 공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완전생산물 기준 이외의 기준은 역외 생산물을 사용한 경우 이를 판정할 수 있는 보완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대한 보완적 기준으로 누적 기준, 미소허용 기준 등이 도입되기도 한다. 한·미 FTA에서는 미국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에 대한 누적이 인정되며, 한·EU FTA의 경우 EU산과 한국산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역외산 원부자재의 비율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세번변경 기준에 따른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 기준이 적용된다.

다. 통관

국제무역이 확대되어온 배경에는 통관절차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0년대 설립된 초창기의 FTA에서도 관세양허와 통관절차가 포함되었고, 통관절차는 사실상 모든 FTA가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의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회원국 간 세관당국이 협력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수입화물이 공항·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 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했다. 특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급특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도입에 합의했다.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이 가능하며,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원산지·쿼타세율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가 적용된다.

수출입 관련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관세협력 확대를 위해 관세분석 기법 조화, 세관공무원 교환, 공동훈련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단속 및 화물 보안 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통관 관련 상호정보교환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통관 지연, 품목분류, 원산지 등 관련 분쟁발생 시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는 절차를 두기도 한다.

5.2.2. 무역규범 및 관련 분야

가. 무역구제

무역구제조치란 특정품목의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

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구제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SG),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다자무역체제는 무역자유화로 발생하는 산업피해 혹은 피해우려를 줄이기 위해 특정조건하에 무역구제조치 도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역구제조치의 남발로 교역이 저해되는 경우가 자주 발행하고 있다. FTA에서도 무역구제조치를 허용하지만, 가급적 교역증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산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게 된다. FTA에서는 양자간 SG를 도입하거나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형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하기도 한다.

나. 동식물위생(SPS)

동식물위생(SPS) 조치는 동식물검역 조치로 불리기도 하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에 대한 국제규범을 의미한다.¹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식품의 안전성 및 병해충이나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TA 협상에서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역은 다자무역체제의 규범(WTO SPS)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FTA 협정이 WTO 다자무역규범을 준수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일부 WTO 플러스 요소를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위생검역 관련 협의기구(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설치를 통해 FTA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위생검역 쟁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동식물 위생검역은

¹ 동 특정 수입요건 부과의 근거가 되는 수출국의 동식물 위생상황은 WTO SPS 협정, CODEX, OIE, IPPC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수입국이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CODEX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는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또는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IPPC는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을 의미한다.

WTO 위생검역협정(SPS)을 준수한다는 선언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한·미 FTA는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측 간 SPS 조치 관련 분쟁사항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검역 절차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문조항을 협정에 포함시켰다.

다. 기술장벽

무역에 있어 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인하여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이들 기술장벽 요소들에 대한 각국의 제도가 자국의 산업적 여건 및 정책목적에 의해 규정되어왔고, 이러한 차이는 국제무역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 중복적인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자국제품과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무역에서 기술장벽은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특정제품이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판정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교역장벽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FTA에서 회원국은 기술규제를 포함한 제도 측면의 요인이 회원국가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양국은 기술규정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라.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혹은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

장권, 상표권 등으로 분류된다. 연구개발에 투자 확대와 국제규범의 강화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이 체결되어 있다. TRIPs 협정은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면서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UR 협상에서 타결되어 1995년 WTO 출범시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확립되었다.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이 외국에 의해 침해당한 경우 국가가 나서 상대방 정부에 시정을 위한 통상압력을 가하거나, WTO에 제소하기도 한다. 불법으로 복제한 제품 및 소프트웨어 유통, 상표와 마크 도용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위반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소비자권리 보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필요로 하며, 기업은 장기간 동일 표시 또는 상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축적된 신용으로 소비자의 상품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은 국제규범화가 어렵기 때문에 WTO 규범은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보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자국의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을 규정하고 이를 전파시켜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FTA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자국의 풍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한미 FTA에서 미국은 지적재산권(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하되,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방송보상청구권을 내국민대우원칙 예외로 설정하였다. 방송보상청구권은 방송 등에서 음반이 사용되었을 경우,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전제로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 정부조달

정부조달이란 정부기관(중앙, 지방, 공공기관 포함)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민간부문으로부터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조달은 그 특성상 정부라는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이 그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개방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조달이 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점 인식되면서 조달시장도 개방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제는 다자무역협상 또는 지역무역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협상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무역 협상에서 정부조달은 과거보다 훨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중 일부는 FTA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반영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부조달협정은 WTO 일부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복수국 협정이며, 우리나라·미국·EU가 모두 회원국이다. WTO GPA는 일정 금액 이상(‘하한선’으로 부름)의 정부기관의 구입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되며, WTO 회원국별로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2007년 7월 GPA 개정협정안이 회원국 간 확정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GPA 개정협정안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행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미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 정부조달의 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연방정부)의 입찰 가운데 의무적으로 상대국 기업에게도 입찰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 양허 하한선을 인하하였다. 양측은 중앙정부(연방정부) 상품,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개방하한금액: Threshold)을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하하여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을 상당 부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일부 FTA 협상에서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예외 또는 양허 하한선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한·미 FTA 협정에서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우리

나라 양허안에 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바.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계약이나 결제 등을 하는 거래형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간 거래의 일부는 전자상거래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화되었으나, 인터넷이 일반 소비자에게 보급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FTA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기만적 행위 방지, 소비자보호 등의 이슈가 협정에 포함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기로 합의하였는데, 온라인 디지털제품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다.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무관세가 결정된 이후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²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무관세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HS code상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이며, 상품양허안에서 양국 모두 8524류는 무관세하였다. 단,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상대방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³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적용에서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력조항으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와 기만적인

²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³ FTA뿐만 아니라 WTO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혜국대우(MFN)’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임. 최혜국대우는 여러 수입품들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의 비차별성을,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에 대한 대우와 국산품에 대한 대우 간 비차별성을 의미함.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국의 소비자 보호기관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등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며,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국경 간 정보 이동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시청각 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6. 주요 연구내용

연구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연구 개요를 설명하고 분석 대상 국가별 FTA에서 관세양허 부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세 이외 분야의 분석 내용을 담는 연구내용은 중국에 대해 네 가지 사례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관세양허 분야에서는 각 FTA 사례의 협정 배경을 살펴보고 양국의 관세양허안을 분석하였다. 관세양허안은 HS 2단위, 4단위를 기준으로 양허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계절관세, 양허예외, 쿼터제공(쿼터 대상 품목 및 증량 방식) 등도 함께 분석하였다. 농산물긴급구제조치(ASG)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ASG를 중심으로 긴급구제조치를 분석하였으며, 대상품목, 긴급관세 부과 방식, 방동요건 및 기간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FTA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후 분석대상국의 총괄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관세 이외 분야에서는 각 FTA의 원산지 규정, 동식물위생 조치, 지리적

표시, 농산물 수출보조, 수출세, 농업협력, 내국민대우, 정부조달, 수입 및 수출 제한 등을 분석하였다. 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FTA 사례에서의 원산지 규정을 각 기준별(완전생산물, 부가가치, 품목 특정 기준 등)로 분석을 한 후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원산지 규정 이외의 분야들도 각국의 FTA 사례별로 분석 하고 협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

1.1. 추진 배경 및 과정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정은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아울러 서비스와 투자협상을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인 FTA이다. 이전에 체결된 중국의 FTA 협상 대상국들은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같은 개도국들이었으며, 협정의 내용도 상품협상은 체결하되 서비스와 투자협상은 추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3년 양국 간의 FTA에 대한 공동연구에 이어 2005년부터 3년 동안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8년 4월 7일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2008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1.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중국은 전체 농산물 994개 중 95%인 944개를 12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양허하였다. 양허 유형은 즉시 철폐, 5년 철폐, 6년 철폐, 9년 철폐, 10년 철폐, 12년 철폐 및 양허 제외 등 모두 7가지이다.

즉시 철폐(유형 A) 대상 품목은 154개지만 기존 무관세 품목 74개를 제

외하면 실제로 즉시 철폐 품목은 80개이다. 조제사료(23류) 27개, 곡물(10류) 8개, 채유용 종자(12류) 7개, 커피와 차(09류) 5개 등이 포함된다.

표 2-1. 중국·뉴질랜드 FTA 농산물 양허 계획

단위: 개

구분	이행 기간별 관세 철폐 계획							예외 품목	총계
	즉시 철폐	5년간 균등 철폐	6년간 균등 철폐	9년간 균등 철폐	10년간 균등 철폐	12년간 균등 철폐	소계		
중국	154 (15.5)	619 (62.3)	133 (13.4)	27 (2.7)	7 (0.7)	4 (0.4)	944 (95.0)	50 (5.0)	994 (100.0)
뉴질랜드	742 (76.3)	230 (23.7)	-	-	-	-	972 (100.0)	-	972 (100.0)

주: () 속은 비중(%)이다.

자료: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5년 철폐(유형B)는 619개(62.3%), 6년 철폐(유형C)는 133개(13.4%)이다. 채소류(07류) 97개와 과실류(08류) 33개, 육류(02류) 55개가 포함된다. 10년(유형E)과 12년(유형F)간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밀크, 크림, 버터, 가공치즈 등 낙농품(04류) 11개가 포함된다. 이들 품목은 특별농산물세이프가드(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SASM) 적용 대상이며,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간심사제도(Mid-term review mechanism)를 도입하였다.

양허 제외 품목은 50개이다. 동·식물성유지(15류)가 19개, 곡물(10류)은 밀과 옥수수, 쌀 등 15개, 곡분(11류)은 밀가루와 옥수수가루 등 10개, 사탕수수당 등 당류(17류) 6개 등이다. 그 밖에 HS-24류 내에 속하지 않는 면사와 면직물, 목재가공품과 종이류 등 5개 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이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목재 가공품과 종이류 3개 품목을 양허 제외한 것은 WTO 가입하면서 추후 어느 국가와의 FTA 체결에서든 목재 가공품과 종이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경우 이를 모든 WTO 회원국

들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양허하였기 때문이다.⁴

표 2-2. 중국·뉴질랜드 FTA(중국의 양허안)

단위: 개, %

HS-2	기존 무관세	즉시 철폐	5년 철폐	6년 철폐	9년 철폐	10년 철폐	12년 철폐	합계	양허 제외	비중 (%)	평균 관세율
01류	20	-	31	-	-	-	-	51	-	5.1	6.1
02류	-	-	42	13	18			73	-	7.3	18.9
04류	1	-	26	1	-	7	4	39	-	3.9	15.2
05류	4	2	36	-	-	-	-	42	-	4.2	12.3
06류	7	2	16	2	-	-	-	27	-	2.7	8.5
07류	11	4	97	-	-	-	-	112	-	11.3	10.9
08류	2	-	42	33	6	-	-	83	-	8.4	18.5
09류	-	5	34	1	-	-	-	40	-	4.0	13.6
10류	5	8	-	-	-	-	-	28	15	2.8	0.7
11류	-	4	21	1	-	-	-	36	10	3.6	12.4
12류	22	7	75	1	-	-	-	105	-	10.6	9.3
13류	1	4	12	-	-	-	-	17	-	1.7	11.1
14류	-	2	7	-	-	-	-	9	-	0.9	9.3
15류	-	1	30	3	-	-	-	53	19	5.3	9.6
16류	-	10	37	1	-	-	-	48	-	4.8	12.0
17류	-	-	6	6	-	-	-	18	6	1.8	13.2
18류	-	-	10	1	-	-	-	11	-	1.1	11.0
19류	-	-	16	6	-	-	-	22	-	2.2	19.1
20류	-	3	47	39	3	-	-	92	-	9.3	20.5
21류	-	1	9	12	-	-	-	22	-	2.2	21.9
22류	1	-	17	7	-	-	-	25	-	2.5	21.6
23류	-	27	3	-	-	-	-	30	-	3.0	5.4
24류	-	-	5	6	-	-	-	11	-	1.1	26.9
합계	74	80	619	133	27	7	4	994	50	100	14.1
비중(%)	7.4	8.0	62.3	13.4	2.7	0.7	0.4	100	5.0		

자료: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⁴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Z·China FTA(specific in agriculture) (www.ChinaFTA.govt.nz).

1.3. 뉴질랜드의 농산물 양허안

뉴질랜드의 양허계획은 즉시 철폐와 5년 철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972개 전체 양허대상 농산물 중 742개(76.3%)를 즉시 철폐하고 230개(23.7%)를 5년 철폐로 양허하였다.

표 2-3. 중국·뉴질랜드 FTA(뉴질랜드 양허안)

단위: 개, %

HS-2	기존 무관세	즉시 철폐	5년 철폐	합계	양허 제외	비중(%)	평균 관세율
01류	22	-	-	22	-	2.3	6.0
02류	35	16	12	63	-	6.5	7.6
04류	26	6	2	34	-	3.5	6.0
05류	15	-	-	15	-	1.5	6.0
06류	16	3	-	19	-	2.0	6.0
07류	55	7	7	69	-	7.1	6.0
08류	54	4	3	61	-	6.3	6.0
09류	27	17	3	47	-	4.8	6.0
10류	16	-	-	16	-	1.6	6.0
11류	11	12	11	34	-	3.5	6.0
12류	37	-	2	39	-	4.0	6.0
13류	10	-	-	10	-	1.0	6.0
14류	5	-	-	5	-	0.5	6.0
15류	45	4	9	58	-	6.0	6.0
16류	44	6	20	70	-	7.2	6.0
17류	12	5	2	19	-	2.0	6.0
18류	6	-	5	11	-	1.1	6.0
19류	2	-	26	28	-	2.9	6.0
20류	19	42	68	129	-	13.3	6.0
21류	19	2	31	52	-	5.3	6.0
22류	91	9	21	121	-	12.4	6.0
23류	19	-	8	27	-	2.8	6.0
24류	16	7	-	23	-	2.4	6.0
합계	602	140	230	972	-	100	6.1
비중(%)	61.9	14.4	23.7	100	0		

자료: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기존 무관세 품목 602개를 제외한 즉시 철폐 품목 140개는 기준관세율(base rate)이 5%이다. 채소과실조제품(20류)이 42개로 가장 많고, 커피와 차(09류) 17개, 육류(02류) 16개 등이 포함된다. 주정음료 2개의 종량세도 즉시 철폐된다.

5년 철폐 품목의 기준관세율은 6~7% 수준이다. 채소과실조제품(20류)이 68개, 기타 조제식료품(21류) 31개, 곡물조제품과 빵류(19류) 26개 등이다.

1.4. 세이프가드(SG)

중·뉴질랜드 FTA 협정은 다자간 세이프가드(64조)와 양자간 세이프가드(66조)뿐만 아니라 특별농산물세이프가드(SASM)도 규정하고 있다(부속서 2). SASM 조치는 관세가 철폐된 후 5년까지 발동할 수 있다.

일반 SG 조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구제조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SASM 조치는 피해 입증이나 보상 없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trigger level)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일반 SG 조치는 대상품목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SASM 조치는 우유와 크림, 버터, 치즈 등 사전에 정해진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발동기준은 11개 대상품목을 4개 부류로 구분하고 각 부류별 발동기준을 별표로 제시하고 있다. 1부류에 속하는 지방함량 1% 초과 6% 미만인 비농축 우유 또는 가당 우유와 크림의 경우 발효시점 1,300톤에서 2021년 2,451톤까지 매년 수입량 기준 발동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SASM 조치는 WTO 농업협정의 특별세이프가드(SSG)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SASM 적용 대상 품목 가운데 2019년까지 12년 동안 관세 철폐 예정인 고형질 지방함량 1.5% 이상인 우유와 크림 4개에 대해 추가적으로 중간심사제도(Mid-term review mechanism)를 도입하였다. 이 품목들은 2023년까지 SASM을 발동할 수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중간심사 결과 발동기준 이상 수입될 경우 SASM을 적용하여 1년 동안 관세 양허를 유보하고, 물량기준 특별 세이프가드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1.5. 평가

중국과 뉴질랜드는 양국 모두 농업경쟁력이 높은 편이지만, 양국간 농업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국만 양허 제외 품목을 55개를 허용하는 비대칭적 FTA가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 협상 시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면서 비대칭적인 양허 제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중·뉴질랜드 FTA 협정은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SG(제64조)와 양자간 SG(제66조) 외에 특별농산물SG(SASM)도 규정하고 있다(부속서 2). SASM 대상품목은 뉴질랜드의 경쟁력이 높은 우유와 크림, 버터, 치즈 등 낙농품 11개로 최장 2023년까지 발동할 수 있는 발동기준 물량을 명시하였다.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SG 조항의 본래 취지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시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돌발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FTA 협정상 SG 조치는 발동요건을 간소화하는 대신 발동기간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상품목도 사전에 명시하여 SG 조치의 원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SG 조치는 양국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과거 ‘마늘 SG’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중·뉴질랜드 FTA 협정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만 일방적으로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 등 SASM 대상인 일부 낙농품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뉴질랜드의 낙농산업 경쟁력을 감안한 조치로서 우리나라도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적정한 범위 내의 민감품목에 대해 SG 조치와 중간심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중국·ASEAN FTA(CAFTA)

2.1. 추진 배경 및 과정

아세안 경제는 발전 초기 주로 일본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 이른바 ‘아시아의 4마리 용’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1990년대 중반 태국, 말레이시아의 노동집약형 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어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으나 일본의 산업기술 갱신이 상대적으로 정체됨에 따라 아세안 경제의 산업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일본이 선도했던 ‘안행(雁行)성장모델’ 효과가 더 이상 크게 발휘되지 않게 되었다.

시장측면에서 아세안 각국은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자원부존이 유사하여 산업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상호보완성도 약해 상호 교역 및 투자의 발전이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은 외부시장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주요 수출시장이 미국, 일본, EU에 집중되어 국제경제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수출시장 다원화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자금, 시장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경제는 독립적인 경제성장 능력이 취약하고 경제적 안정 능력도 미약하였다. 아세안 경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수직적 분업체계에 편입되어 가공무역 위주로 성장하여 내부적으로 완결적인 공업체계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ASEAN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 추진은 이러한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조차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상황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했다. 시장다변화 전략 이외에도 정치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세안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에 대한 압박효과로 한·중, 중·일 FTA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고 대만과의 FTA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세안과의 무역에서 인민폐를 결

24 관세양허 분야 FTA 협정

제수단으로 채택하여 인민폐의 기축통화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외환위기로 부터 위험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CAFTA의 추진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중국·ASEAN FTA의 추진과정

일자	주요 내용
2000. 11.	제4차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중국 주룽지 총리가 중국·아세안 FTA 구상 제안
2001. 11.	제5차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CAFTA 협상 개시 선언
2002. 11.	제6차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CAFTA 기본협정 체결(2003. 7. 1. 발효)
2003. 6.	기본협정에서 규정한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를 위해 태국과 협정 체결(2003. 10. 1. 발효)
2004. 1.	기본협정 6조에서 규정한 조기수확프로그램 실시 - 01~08류 농산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2006년까지 관세 완전 철폐
2004. 11.	제8차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상품무역협정 체결(2005. 1. 1. 발효)
2007. 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2007. 7. 1. 발효)
2009. 8.	투자협정 체결(2010. 1. 발효) 서비스와 투자부문에서의 단계적인 자유화 추진 합의
2010. 1.	관세 철폐 및 자유무역지대 개시

2.2. CAFTA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CAFTA 협정문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5. 기본협정문(2002. 11. 4.)의 구성

	구 성
서문	CAFTA 체결을 통해 중국-아세안 간 긴밀한 경제관계 형성 목표(1조), 전면경제협력조치(2조)
제1부분	상품무역(3조), 서비스무역(4조), 투자(5조), 조기수확(6조)
제2부분	기타 경제협력분야(7조)
제3부분	시간안배(8조), 최혜국대우(9조), 일반예외(10조), 분쟁해결기제(11조), 담판기구 안배(12조), 기타 조항(13조), 수정(14조), 발효(15조)
부속서 1	각 협정 당사국의 제6조(3)(a)(i) 조기수확프로그램 중 예외상품 목록
부속서 2	제6조(3)(a)(iii) 조기수확프로그램 중 특정상품
부속서 3	A. 제6조 제3항(b)(i)에 의거하여 관세인하·폐지를 실시하는 상품 종류 B. 제6조 제3항(b)(i)의 실시 시간계획
부속서 4	제6조 제5항에서 언급한 활동

기본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2010년까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제2조)
- ② 기본협정의 조속 실시를 위해 01~08류의 모든 HS 8단위 혹은 HS 9단위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제6조).
- ③ 농업, 정보통신기술, 인력자원개발, 투자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실시(제7조)
- ④ 상품무역 협상은 2003년 초에 시작하여 2004년 6월 30일 이전 완료(2010년까지 중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간 자유무역지대 건설; 2015년까지 아세안 신규회원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포함하여 자유무역지대 건설)(제8조)
- ⑤ 기본협정문 3조에서 규정한 상품 원산지규정 관련 협상은 2003년 12월 까지 완료(제8조)
- ⑥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 협상은 2003년에 시작하여 빠른 시간 내에 완료(제8조)

표 2-6. 상품무역 협정문(2004. 11. 29.)의 구성

구 분	구 성
본문	정의(1조), 국내세와 국내법의 내국민대우(2조), 관세삭감과 폐지(3조) 투명도(4조), 원산지규정(5조), 양허의 수정(6조), WTO규칙(7조) 수량제한과 비관세장벽(8조), 세이프가드(9조), 양허안의 가속 실시(10조) 국제수지 보장 조치(11조), 일반예외(12조), 안전예외(13조) 중국 시장경제지위 승인(14조), 국가, 지역 및 지방정부(15조), 집행기구(16조) 심의회(17조), 부속서와 장래의 문건(18조), 수정(19조), 기타(20조) 분쟁해결(21조), 교환보존(22조), 발효(23조)
부속서	부속서1. 일반품목(Normal Track)의 관세인하 및 폐지 세부원칙 부속서2.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의 관세인하 및 폐지 세부원칙 부속서3. 원산지규정

2.3. 관세양허

2.3.1. 조기수확 프로그램(EHP)과 농산물 양허안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중국과 아세안 쌍방이 자유무역의 효과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쌍방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호보완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수확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큰 폭으로 관세를 인하하는데 합의하였다(기본협정 제6조).

EHP 상품 범위는 01~08류의 상품이다. 01류(산동물), 02류(육과 식용 내장), 03류(어류 및 기타 수생동물), 04류(유제품, 조란, 천연벌꿀), 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06류(산수목 및 기타 산식물), 07류(식용 채소), 08류(식용 과실 및 견과)가 해당한다. 각국의 EHP 상품 수(HS 8단위 또는 HS 9단위 품목)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 593개

- ② 아세안 구 회원국(6개국): 브루나이 597개, 인도네시아 595개, 말레이시아 599개, 필리핀 214개, 싱가포르 602개, 태국 581개
- ③ 아세안 신규 회원국(4개국): 캄보디아 539개, 미얀마 579개, 베트남 547, 라오스 406개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이 01~08류 상품의 전부를 EHP에 포함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 이들 국가와 양자간 협상을 진행하여 일부 상품을 EHP 예외상품으로 지정하였다. 단,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대우는 하지 않는다. 중국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간에는 예외상품이 없다. 중국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간 예외상품은 2003년 3월 1일 이전 까지 양자협상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간 예외 상품은 다음과 같다.

표 2-7.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예외 상품

중국 : 캄보디아		중국 :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HS 8단위	HS 8단위	HS 8단위	HS 9단위
01류: 1	01류: 1	01류: 8	01류: 4
02류: 7	02류: 7	02류: 12	02류: 6
03류: 1	03류: 1	04류: 8	04류: 2
07류: 14	07류: 14	08류: 3	08류: 3
08류: 7	08류: 7	합계: 31	합계: 15
합계: 30	합계: 3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01~08류 상품 가운데 일부 상품이 중국과의 무역량이 적거나 무역을 통한 이익이 쌍방 간 불균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이들 국가와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하여 일부 01~08류 상품 이외의 상품을 EHP에 포함하였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간 특정 상품(Specific Products)은 2003년 3월 1일 이전 까지 양자협상을 통해 확

정하기로 하였다.

표 2-8.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간의 특정상품

중국 : 인도네시아		중국 :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HS 8단위	HS 9단위	HS-8단위	HS-9단위
09류: 1	09류: 1	27류: 2	27류: 2
15류: 6	15류: 6		
18류: 1	18류: 1		
34류: 2	34류: 2		
40류: 1	40류: 1		
70류: 1	70류: 1		
94류: 2	94류: 3		
합계: 14	합계: 15	합계: 2	합계: 2

특정상품의 특혜관세(우대관세)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간에만 적용하고 기타 국가와는 WTO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간 특정상품의 관세 인하 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9. EHP 상품 관세철폐 계획(중국, 아세안 6개국⁵⁾)

최혜국 관세율	시 기(해당 일 이전)		
	2004년 1월 1일	2005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X > 15\%$	10%	5%	0%
$5\% \leq X \leq 15\%$	5%	0%	0%
$X < 5\%$	0%	0%	0%

⁵ 아세안 6개국이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의미한다.

표 2-10. EHP 상품 관세철폐 계획(아세안 신규회원국⁶)

최혜국 관세율	국 가	시 기(해당 일 이전)						
		2004년 1월 1일	2005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2007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2009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
$X > 30\%$	베트남	20%	15%	10%	5%	0%	0%	0%
	라오스 미얀마	-	-	20%	14%	8%	0%	0%
	캄보디아	-	-	20%	15%	10%	5%	0%
$15\% \leq X \leq 30\%$	베트남	10%	10%	5%	5%	0%	0%	0%
	라오스 미얀마	-	-	10%	10%	5%	0%	0%
	캄보디아	-	-	10%	10%	5%	5%	0%
$X < 15\%$	베트남	5%	5%	0~5%	0~5%	0%	0%	0%
	라오스 미얀마	-	-	5%	5%	0~5%	0%	0%
	캄보디아	-	-	5%	5%	0~5%	0~5%	0%

2.3.2. 상품무역협정의 농산물 양허안

상품무역협정 제3조는 EHP 상품 이외의 모든 상품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민감품목과 고민감품목세분)으로 구분하였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1은 CAFTA 당사국을 ① 중국과 아세안 6개국, ② 베트남, ③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구분하고 각각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을 명시하였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2는 민감품목과 고민감품목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CAFTA 당사국을 ① 중국과 아세안 6개국, ② 베트남, ③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구분하고 각각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을 명시하였다.

⁶ 아세안 신규회원국이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의미한다.

가. 중국과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계획은 다음과 같다.

- ① 2005년 7월 1일까지 일반품목 중 40%의 관세를 0~5%까지 인하
- ②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 중 60%의 관세를 0~5%까지 인하
- ③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의 관세 철폐. 단, HS-6단위 150개 품목은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 철폐 가능
- ④ 2012년 1월 1일까지는 일반품목의 관세 완전 철폐
- ⑤ 기간별 관세철폐 계획에 의거하여 일반품목 중 종량세를 부가하는 품목의 관세도 등량 삭감하여 철폐

표 2-11.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계획

최혜국 관세율	시 기(해당 일 이전)			
	2005년 7월 1일	2007년 1월 1일	2009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
$X \geq 20\%$	20%	12%	5%	0%
$15\% \leq X < 20\%$	15%	8%	5%	0%
$10\% \leq X < 15\%$	10%	8%	5%	0%
$5\% < X < 10\%$	5%	5%	0%	0%
$X \leq 5\%$	불변		0%	0%

민감품목은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은 HS 6단위 400개 품목 이하, 수입 총액의 10%(2001년 무역통계 데이터 기준)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민감품목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 까지 20%로 인하, 2018년 1월 1일까지 0~5%로 인하해야 한다.

고민감품목은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은 민감품목의 40% 이하 또는 100개 품목 이하를 고민감품목으로 선정 가능하다.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은 2015년 1월 1일까지 고민감품목의 최혜국 관세율을 적어도 50%까지 인하한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2는 기간별 관세철폐 계획에 의거하여 민감품목(고

민감품목 포함) 중 종량세를 부가하는 품목의 관세 인하폭은 같은 기간 중 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 인하폭과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2는 또한 TRQ 이내 및 이외 관세율 관리 품목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관세 삭감 및 철폐 계획을 포함하여 늦어도 2005년 3월 31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1에서 제시한 일반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을 토대로 각국별로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농산물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중국은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포함된 01~08류 농산물을 제외하고 일반품목으로 분류된 09~24류 농산물 HS 8단위 5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 태국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1에 근거한 MFN 관세율별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과 구체적인 농산물 양허안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2. 중국의 대태국 농산물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최혜국 관세율		시 기(해당 일 이전)				
		2005년 7월 1일	2007년 1월 1일	2009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	2012년 1월 1일
$X \geq 20\%$	A	20%	12%	5%	0%	0%
	A1	14~19%	12%	5%	0%	0%
	A2	10%	10%	5%	0%	0%
	A3	20%	12%	5%	5%	0%
	SA	2005년 관세율(17~35%) 지속 유지				
$15\% \leq X < 20\%$	B	15%	8%	5%	0%	0%
	SB	2005년 관세율(15%) 지속 유지				
$10\% \leq X < 15\%$	C	10%	8%	5%	0%	0%
	C1	8.6%	7.5%	5%	0%	0%
		5%	5%	5%		
		0%	0%	0%		
	SC	2005년 또는 2006년 관세율(9~10%) 지속 유지				
$5\% < X < 10\%$	D	5%	5%	0%	0%	0%
	SD	2005년 관세율(6.5%) 지속 유지				
$X \leq 5\%$	E	불변		0%	0%	0%
	SE	2005년 관세율(3~5%) 지속 유지				

표 2-13. CAFTA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대태국)

HS-2	A	A1	A2	A3	B	C	C1	D	E	SA	SB	SC	SD	SE	합계	비중 (%)	평균 관세율
09류	3				13	1		3	3	1	11	1			36	7.0	15.1
10류									13						13	2.5	1.5
11류	14	1			3	4		4							26	5.1	18.6
12류	19			1	16	6	1	33	31		1			4	112	21.8	9.4
13류	3				7	2		1	5						18	3.5	11.4
14류					3	6		1	1						11	2.1	10.6
15류	11			3	3	16	1	4				4			42	8.2	15.2
16류	1				18	16	6	1	2		2				46	8.9	14.8
17류	5			1	2	2		2							12	2.3	21.3
18류	1				1	6		3							11	2.1	11.6
19류	6	1		4	10	1									22	4.3	20.8
20류	30	4		23	7	7		1	3	10	1				86	16.7	22.5
21류	11	2		3	3				1	2					22	4.3	25.6
22류	6	2	8	5		2	1			1					25	4.9	30.9
23류									26		2		1	3	32	6.2	5.6
24류															0	0.0	-
합계	110	10	8	40	86	69	9	53	85	14	17	5	1	7	514	100	15.6
비중(%)	21.4	1.9	1.6	7.8	16.7	13.4	1.8	10.3	16.5	2.7	3.3	1.0	0.2	1.4	100		

자료: 중국·ASEAN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www.aseansec.org).

09~24류 514개 품목 가운데 4년 내(2008년까지)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D+E)은 26.9%인 138개 품목으로 2003년 기준 MFN 관세율이 10% 이내인 품목이다. 5년 내(2009년까지)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품목(A+A1+A2+B+C+C1)은 56.8%인 292개 품목으로 2003년 기준 MFN 관세율이 10% 이상이다. 7년 내(2011년까지)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품목(A3)은 7.8%인 40개 품목으로 2003년 기준 MFN 관세율이 25~65%로 높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 1월 1일까지는 일반품목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한 중국·아세안 CAFTA 상품무역협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무역협정 부속서1에 명시된 MFN 관세율별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과 달리 중국이 태국과의 협상에서 2012년까지 2005년 또는 2006년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양허한 품목이 44개 품목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들 품목은 09류 13개, 12류 5개, 15류 4개, 16류 2개, 20류 11개, 21류 2개, 22류 1개, 23류 6개로 09류(거피, 차 및 조미향료)와 20류(채소, 과일, 견과 또는 식물기타부분의 제품)가 가장 많다. 상품무역협정에서 민감품목(고민 감품목)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양허한 내용을 보면 민감품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14. 중국의 대태국 농산물 양허안 일반품목 중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류별	HS-8단 위	품 명	연도별 관세율(%)					
			2003 MFN	2003	2007	2009	2010	2012
09류	09012200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	19	15	15	15	15	15
	09019010	커피의 각과 피	11	10	10	10	10	10
	09019020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품	30	30	30	30	30	30
	09021010	≤3kg인 화차	18	15	15	15	15	15
	09021090	≤3kg인 기타 녹차	18	15	15	15	15	15
	09022010	>3kg인 화차	18	15	15	15	15	15
	09022090	>3kg인 기타 녹차	18	15	15	15	15	15
	09023010	≤3kg인 우롱차	18	15	15	15	15	15
	09023020	≤3kg인 보이차	18	15	15	15	15	15
	09023090	≤3kg인 기타 발효, 반발효 홍차	18	15	15	15	15	15
	09024010	>3kg인 우롱차	18	15	15	15	15	15
	09024020	>3kg인 보이차	18	15	15	15	15	15
	09024090	>3kg인 기타 발효 홍차 및 반발효차	18	15	15	15	15	15
12류	12010091	황대두	3	3	3	3	3	3
	12010092	흑대두	3	3	3	3	3	3
	12010093	청대두	3	3	3	3	3	3
	12010099	기타 대두	3	3	3	3	3	3
	12030000	코프라(건조한 코코넛 과육)	15	15	15	15	15	15
15류	15131100	야자유 조유(Crude oil)	10	9.5	9	9	9	9
	15131900	야자유와 그 분획물	10	9.5	9	9	9	9
	15132100	종려유 조유(Crude oil)	10	10	9	9	9	9
	15132900	정제 종려유	10	10	9	9	9	9
16류	16024910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 돼지고기, 설육	17	15	15	15	15	15
	160249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돼지고기, 설육, 피	17	15	15	15	15	15
20류	20029010	토마토페이스트	21	20	20	20	20	20

34 관세양허 분야 FTA 협정

	20029090	식초 또는 초산 처리한 것을 제외한 조제 토마토	20.3	18	18	18	18	18
	20089910	여지캔	22	20	20	20	20	20
	20089990	목록에 없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	18	15	15	15	15	15
	20098012	망고주스	23	20	20	20	20	20
	20098013	패션푸르트주스	23	20	20	20	20	20
	20098014	구아바주스	23	20	20	20	20	20
	20098019	기타 미혼합 과일주스	23	20	20	20	20	20
	20098020	기타 미혼합 채소주스	23	20	20	20	20	20
	20099010	혼합 과일주스	23	20	20	20	20	20
	20099090	혼합 채소주스, 과일과 채소 혼합주스	25	20	20	20	20	20
21류	21011100	커피농축에센스	23.6	17	17	17	17	17
	21011200	커피농축에센스 또는 커피 기본 성분 제품	36.7	30	30	30	30	30
22류	22029000	기타 무알콜 음료	38	35	35	35	35	35
	23040010	대두유 추출시 얻는 오일케이크	5	5	5	5	5	5
	23040090	대두유 추출시 얻는 기타 고형의 유박	5	5	5	5	5	5
23류	23091010	소매포장한 개 및 고양이 캔사료	18	15	9.1	9.1	9.1	9.1
	23091090	소매포장한 기타 개 및 고양이 사료	18	15	9.1	9.1	9.1	9.1
	23099010	조제된 사료첨가제	5	5	5	5	5	5
	23099090	기타 배합된 동물사료	7.1	6.7	6.5	6.5	6.5	6.5

중국·아세안 CAFTA 상품무역협정에서 중국은 09류 5개, 10류 15개, 11류 10개, 15류 11개, 17류 6개, 20류 6개, 24류 11개 등 64개 품목을 민감품목(고민감품목 포함)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고민감품목은 10류 6개, 11류 7개, 15류 9개, 17류 6개, 24류 6개 등 34개 품목이다.

표 2-15. 중국의 대태국 농산물 양허안 중 민감품목 내역

구분	HS-8단위	품명	2007년 관세율(%)
고민감품목	10류 (6)	10051000 종자용 옥수수	20
		10059000 기타 옥수수	65
		10061011 종자용 장립종 벼	65
		10061091 기타 장립종 벼	65
		10062010 장립종 현미	65
		10063010 장립종 백미	65

(34)	11류 (7)	11010000	소맥 또는 혼합맥의 가루	65
		11022000	옥수수가루	40
		11029011	장립종 쌀가루	40
		11031100	밀 분쇄물 및 조분	65
		11031300	옥수수 분쇄물 및 조분	65
		11032010	밀 펠리트	65
		11042300	기타 가공을 거친 옥수수	65
	15류 (9)	15071000	대두유 조유와 그 분획물	9
		15079000	대두유 정제유와 그 분획물	9
		15111000	종려유 조유와 그 분획물	9
		15119010	팜올레인(녹는점 19-24도)	9
		15119020	팜스테아린(녹는점 44-56도)	8
		15119090	기타 팜올레인 및 그 분획물	9
		15141100	저에루크산 유채유 조유와 그 분획물	9
		15141900	기타 저에루크산 유채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	9
		15149190	겨자유 조유와 그 분획물	9
	17류 (6)	17011100	향료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탕수수당	50
		17011200	향료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않은 사탕무당	50
		17019100	향료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당	50
		17019910	굵은 설탕	50
		17019920	정선 제당	50
		17019990	기타 정제당	50
	24류 (6)	24021000	잎담배로 제조한 시가·셔루트·시가릴로	25
		24022000	잎담배로 제조한 켈런	25
		24029000	담배대용물로 제조한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켈런	25
		24031000	흡연용 담배	57
		24039100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57
		24039900	기타 잎담배 및 담배대용물; 담배엑스와 에센스	57
민 감 품 목 (30)	09류 (5)	9011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지 않은 커피	8
		9011200	카페인을 제거한 볶지 않은 커피	8
		9012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	15
		9041100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않은 후추	20
		9041200	파쇄 또는 분쇄한 후추	20
	10류 (9)	10011000	듀럼종의 밀	65
		10019010	종자용 밀	65
		10019090	기타 밀 및 혼합 맥	65
		10061019	종자용 벼	65
		10061099	기타 벼	65
		10062090	기타 현미	65

	10063090	기타 백미	65
	10064010	장립종 쌀	65
	10064090	기타 쌀	65
11류 (3)	11029019	기타 쌀가루	40
	11031921	장립종 쌀 분쇄물 및 조분	10
	11031929	기타 쌀 분쇄물 및 조분	10
15류 (2)	15149110	유채유 조유와 그 분획물	9
	15149900	기타 유채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	9
20류 (6)	20082010	밀폐용기에 담긴 파인애플	15
	20082090	식초 또는 초산 처리한 것을 제외한 파인애플	15
	20089920	밀폐용기에 담긴 용안	15
	20094100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파인애플주스	10
	20094900	기타 파인애플주스	10
	20098011	코코넛주스	10
24류 (5)	24011010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황색종 잎담배	10
	24011090	기타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잎담배	10
	24012010	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황색종 잎담배	10
	24012090	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잎담배	10
	24013000	담배 부산물	10

이들 민감품목(고민감품목 포함)은 국제경쟁력이 약하거나 식량안보 차원에서 관리되는 품목으로 대부분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서도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곡물(10류)은 밀, 옥수수, 쌀 등 15개가 포함되었으며, 관세율이 65%로 매우 높은 품목이다. 이중 옥수수, 쌀 관련 6개 품목은 고민감품목이다. 곡분(11류)은 밀가루, 쌀가루, 옥수수가루 등 10개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7개 품목이 고민감품목이다. 관세율도 대부분 40~65%로 높은 수준이다. 동식물성유지(15류)는 11개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9개 품목이 고민감품목으로 관세율은 대부분 8~9%이다. 담배류(24류)는 11개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6개 품목이 고민감품목으로 관세율은 10~57%이다. 사탕수수 당 등 당류(17류)는 6개가 포함되었으며 모두 고민감품목으로 관세율은 50% 수준이다. 이외에도 채소, 과일류(20류) 6개, 거피, 차류(09류) 5개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양허되었다.

나. 태국 농산물 양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⁷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포함된 01~08류를 제외한 09~24류 농산물 389개 품목 가운데 5년 내(2009년까지)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A+B+C)은 73.8%인 287개 품목으로 현행 관세율이 10% 이상인 품목이다. 4년 내(2008년까지)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D+E)은 14.1%인 55개 품목으로 현행 관세율이 10% 이내의 품목이다.

태국의 민감품목(고민감품목 포함)은 09류 11개, 10류 5개, 11류 1개, 12류 4개, 15류 8개, 16류 1개, 17류 4개, 20류 4개, 21류 2개, 22류 1개, 23류 1개, 24류 3개 등 총 47개 품목이다. 조기수확 품목을 제외한 양허품목의 12.1%를 차지하며, 이중 고민감품목이 39개이다. 커피, 차류(09류)는 녹차, 홍차 등 11개 품목이 고민감품목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관세율이 33.3%이다. 동식물성유지(15류)는 8개로 모두 고민감품목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관세율은 21%이다. 10류(곡물)는 5개로 모두 고민감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⁷ 종가세 및 종량세로 양허한 09~24류 농산물(2004년도 기준 HS-8 단위 389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16. CAFTA 태국의 농산물 양허안(대중국)

HS-2	A	B	C	D	E	S	H	합계	비중(%)	평균 관세율
09류	21	-	-	-	-	-	11	32	8.2	33.3
10류	-	-	-	-	-	-	5	5	1.3	-
11류	26	-	-	-	-	1	-	27	6.9	32
12류	29	-	-	5	11	-	4	49	12.6	21.5
13류	3	-	1	8	-	-	-	12	3.1	10
14류	5	-	-	-	3	-	-	8	2.1	18.3
15류	32	17	1	-	-	-	8	58	14.9	21
16류	25	-	-	-	-	1	-	26	6.7	26
17류	12	-	2	-	1	-	4	19	4.9	25.7
18류	2	9	-	-	-	-	-	11	2.8	13.1
19류	19	-	-	3	-	-	-	22	5.7	25.9
20류	46	-	-	-	-	4	-	50	12.9	30
21류	11	-	2	2	-	-	2	17	4.4	29
22류	17	-	-	-	1	-	1	19	4.9	54.4
23류	-	-	1	20	1	2	1	25	6.4	9.2
24류	6	-	-	-	-	-	3	9	2.3	60
합계	254	26	7	38	17	8	39	389	100	25.2
비중(%)	65.3	6.7	1.8	9.8	4.4	2.1	10.0	100		

주: MFN 관세율 기준으로 A는 $X \geq 20\%$; B는 $15\% \leq X < 20\%$; C는 $10\% \leq X < 15\%$; D는 $5\% < X < 10\%$; E는 $X \leq 5\%$; S는 민감품목; H는 고민감품목이다.

자료: 중국·ASEAN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www.aseansec.org).

다. 베트남의 농산물 양허안⁸

베트남의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계획은 다음과 같다.

- ①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 중 50%의 관세를 0~5%까지 인하
- ②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의 관세 철폐. 단, HS-6단위 150개 품목은 2018년 1월 1일까지 관세 철폐 가능
- ③ 2018년 1월 1일까지는 일반품목의 관세 완전 철폐
- ④ 기간별 관세철폐 계획에 의거하여 일반품목 중 종량세를 부가하는 품목

⁸ 증가세로 양허한 09~24류 농산물(2004년도 기준 HS-8단위 784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의 관세도 등량 삭감하여 철폐

표 2-17. 베트남의 일반품목 관세철폐 계획

최혜국 관세율	시 기(해당 일 이전)							
	2005년 7월1일	2006년 1월1일	2007년 1월1일	2008년 1월1일	2009년 1월1일	2011년 1월1일	2013년 1월1일	2015년 1월1일
$X \geq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leq X < 60\%$	40%	35%	35%	30%	25%	15%	10%	0%
$35\% \leq X < 45\%$	35%	30%	30%	25%	20%	15%	5%	0%
$30\% \leq X < 35\%$	30%	25%	25%	20%	17%	10%	5%	0%
$25\% \leq X < 30\%$	25%	20%	20%	15%	15%	10%	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5%	10%	0~5%	0%
$15\% \leq X < 20\%$	15%	15%	10%	10%	10%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10%	8%	5%	0~5%	0%
$7\% \leq X < 10\%$	7%	7%	7%	7%	5%	5%	0~5%	0%
$5\% \leq X < 7\%$	5%	5%	5%	5%	5%	5%	0~5%	0%
$X < 5\%$	불변							0%

민감품목 수는 HS 6단위 500개 품목 이하로 선정이 가능하다. 수입 총액 상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민감품목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을 2015년 1월 1일 까지 일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베트남은 고민감품목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아세안 신규 회원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2018년 1월 1일까지 초민감품목의 최혜국 관세율을 적어도 50%까지 인하해야 한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2는 기간별 관세철폐 계획에 의거하여 민감품목(고민감품목 포함) 중 종량세를 부가하는 품목의 관세 인하폭은 같은 기간 종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 인하폭과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2는 또한 TRQ 이내 및 이외 관세율 관리 품목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관세 삭감 및 철폐 계획을 포함하여 늦어도 2005년 3월 31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포함된 01~08류를 제외한 09~24류 농산물 784개 품목은 MFN 관세율에 따라 11개의 관세인하 계획이 존재하며 2014년 말 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표 2-18. 베트남의 대중국 농산물 양허안

HS-2	A	B	C	D	E	F	G	H	I	J	K	S	합계	비중	평균 관세율
09류	-	14	-	9	-	24	-	-	-	-	-	-	47	6.0%	30.9
10류	-	2	17	-	-	-	-	5	-	4	7	-	35	4.5%	24.5
11류	-	-	-	8	-	28	-	1	-	2	-	-	39	5.0%	21
12류	-	-	-	3	-	-	1	33	-	1	27	-	65	8.3%	6.8
13류	-	-	-	-	-	-	-	-	-	18	1	-	19	2.4%	4.9
14류	-	-	-	-	-	-	-	-	-	8	-	3	11	1.4%	5
15류	-	47	23	2	-	-	8	7	-	57	7	-	151	19.3%	25.3
16류	-	47	-	-	-	-	-	-	-	-	-	5	52	6.6%	50
17류	-	3	-	-	-	1	-	5	-	4	7	6	26	3.3%	18.3
18류	-	8	-	3	-	1	-	5	-	-	-	-	17	2.2%	32.9
19류	-	41	1	9	-	-	5	-	-	1	-	-	57	7.3%	42.8
20류	-	89	-	-	-	-	-	-	-	-	-	-	89	11.4%	50
21류	-	13	4	19	-	11	2	1	-	3	-	-	53	6.8%	31.2
22류	23	13	-	-	-	1	-	-	-	-	-	23	60	7.7%	87.8
23류	-	-	-	-	-	-	-	21	-	1	12	-	34	4.3%	6.3
24류	-	-	-	-	-	-	-	-	-	-	-	29	29	3.7%	41.6
합계	23	277	45	53	0	66	16	78	0	99	61	66	784	100.0%	29.5
비중	2.9%	35.3%	5.7%	6.8%	0.0%	8.4%	2.0%	9.9%	0.0%	12.6%	7.8%	8.4%	100.0%		

주: MFN 관세율 기준으로 A는 $X \geq 60\%$; B는 $45\% \leq X < 60\%$; C는 $35\% \leq X < 45\%$; D는 $30\% \leq X < 35\%$; E는 $25\% \leq X < 30\%$; F는 $20\% \leq X < 25\%$; G는 $15\% \leq X < 20\%$; H는 $10\% \leq X < 15\%$; I는 $7\% \leq X < 10\%$; J는 $5\% \leq X < 7\%$; K는 $X < 5\%$; S는 민감품목을 나타냄.

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⁹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계획은 다음과 같다.

- ① 캄보디아는 2012년 1월 1일, 라오스와 미얀마는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 중 50%의 관세를 0~5%까지 인하
- ②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 중 40%의 관세를 철폐
- ③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의 관세 철폐. 단, HS 6단위 150개 품목은 2018년 1월 1일까지 관세 철폐 가능
- ④ 2012년 1월 1일까지는 일반품목의 관세 완전 철폐
- ⑤ 기간별 관세철폐 계획에 의거하여 일반품목 중 종량세를 부가하는 품목의 관세도 등량 삭감하여 철폐

표 2-19.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일반품목 관세철폐 계획

최혜국 관세율	시 기(해당 일 이전)							
	2005년 7월1일	2006년 1월1일	2007년 1월1일	2008년 1월1일	2009년 1월1일	2011년 1월1일	2013년 1월1일	2015년 1월1일
$X \geq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leq X < 60\%$	40%	35%	35%	30%	25%	15%	10%	0%
$35\% \leq X < 45\%$	35%	35%	30%	30%	20%	15%	5%	0%
$30\% \leq X < 35\%$	30%	25%	25%	20%	20%	10%	5%	0%
$25\% \leq X < 30\%$	25%	25%	25%	20%	20%	10%	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5%	10%	0~5%	0%
$15\% \leq X < 20\%$	15%	15%	15%	15%	15%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10%	8%	5%	0~5%	0%
$7\% \leq X < 10\%$	7%*	7%*	7%*	7%*	7%*	5%	0~5%	0%
$5\% \leq X < 7\%$	5%	5%	5%	5%	5%	5%	0~5%	0%
$X < 5\%$	불변							0%

주: 미얀마는 7.5% 이하 세율을 2010년까지 유지

민감품목은 HS 6단위 500개 품목 이하로 민감품목 선정이 가능하다. 민감품목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을 2015년 1월 1일 까지 20%로 인하하고

⁹ 캄보디아가 종가세로 양허한 09~24류 농산물(2004년도 기준 HS-8단위 573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020년 1월 1일까지는 0~5%로 인하해야 한다.

고민감품목은 민감품목의 40% 이하 또는 150개 품목 이하로 선정이 가능하다. 2018년 1월 1일까지 고민감품목의 최혜국 관세율을 적어도 50%까지 인하해야 한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2는 기간별 관세철폐 계획에 의거하여 민감품목(고민감품목 포함) 중 종량세를 부가하는 품목의 관세 인하폭은 같은 기간 중 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 인하폭과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2는 또한 TRQ 이내 및 이외 관세율 관리 품목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관세 삭감 및 철폐 계획을 포함하여 늦어도 2005년 3월 31일까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포함된 01~08류를 제외한 09~24류 농산물 583개 품목은 MFN 관세율에 따라 11개의 관세인하 계획이 존재하며 2014년 말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표 2-20. 캄보디아의 대중국 농산물 양허안

HS-2	A	B	C	D	E	F	G	H	I	J	K	X	S	HS	합계	비중	평균 관세율
09류	-	-	5	-	-	-	30	-	8	-	-	-	-	-	43	7.5%	15.8
10류	-	-	-	-	-	-	12	-	17	-	2	-	-	-	31	5.4%	9.6
11류	-	-	34	-	-	-	-	-	4	-	-	-	-	-	38	6.6%	32.1
12류	-	2	2	-	-	-	25	-	5	-	12	-	3	1	50	8.7%	12.8
13류	-	5	-	-	-	-	12	-	-	-	-	-	-	-	17	3.0%	25.3
14류	-	-	-	-	-	-	6	-	-	-	-	4	-	-	10	1.7%	15
15류	-	-	-	-	-	-	-	-	50	-	-	-	-	-	50	8.7%	7
16류	-	-	35	-	-	-	-	-	5	-	-	-	-	-	40	7.0%	31.5
17류	-	-	3	-	-	-	-	-	15	-	-	-	-	3	21	3.7%	11
18류	-	-	17	-	-	-	2	-	-	-	-	-	-	-	19	3.3%	32.9
19류	-	-	6	-	-	-	3	-	30	-	-	-	2	3	44	7.7%	12.3
20류	-	-	48	-	-	-	-	-	3	-	-	-	3	3	57	9.9%	33.5
21류	-	-	10	-	-	-	-	-	2	-	-	-	2	17	31	5.4%	22.4
22류	-	43	14	-	-	-	-	-	-	-	-	-	2	3	62	10.8%	45.4
23류	-	-	2	-	-	-	-	-	33	-	-	-	-	-	35	6.1%	8.6
24류	-	11	-	-	-	-	-	-	-	-	-	-	-	14	25	4.4%	34

합계	0	61	176	0	0	0	90	0	172	0	14	4	12	44	573	100.0%	20.9
비중	0.0%	10.6%	30.7%	0.0%	0.0%	0.0%	15.7%	0.0%	30.0%	0.0%	2.4%	0.7%	2.1%	7.7%	100.0%		

주: MFN 관세율 기준으로 A는 $X \geq 60\%$; B는 $45\% \leq X < 60\%$; C는 $35\% \leq X < 45\%$; D는 $30\% \leq X < 35\%$; E는 $25\% \leq X < 30\%$; F는 $20\% \leq X < 25\%$; G는 $15\% \leq X < 20\%$; H는 $10\% \leq X < 15\%$; I는 $7\% \leq X < 10\%$; J는 $5\% \leq X < 7\%$; K는 $X < 5\%$; S는 민감품목; HS는 고민감품목을 나타냄.

캄보디아의 민감품목(고민감품목 포함)은 12류 4개, 17류 3개, 19류 5개, 20류 6개, 21류 19개, 22류 5개, 24류 14개 등 모두 56개 품목이다. 조기수확 품목을 제외한 양허품목의 9.8%를 차지하며, 이중 고민감품목이 44개이다. 기타 조제식품류(21류)는 가장 많은 19개 품목이 민감품목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관세율이 22.4%이며 이 중 17개 품목이 고민감품목이다. 담배류(24류)는 14개로 모두 고민감품목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관세율은 34%이다.

2.3.4. 세이프가드(SG)

상품무역협정문 제9조는 FTA 협정 이행 과정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동종 품목 또는 직접적 경합품목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 위협이 있는 경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SG)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협정 당사국 일방으로부터 수입되는 어떤 품목의 비중이 협정 당사국 전체로부터 수입되는 해당 품목 총량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SG 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협정 당사국 일방이 SG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MFN 실행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다. 상품무역협정문 부속서 1과 부속서 2에서 규정한 관세양허표에 근거하여 SG 조치가 종결되는 해의 1월 1일 시행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SG 조치의 최초 발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품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SG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 어

면 품목의 이행기간은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시점에서 시작되며 해당 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서 5년 후에 종료된다.

SG 조치 발동 시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5조의 수량제한조치와 제9조, 제13조, 제14조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수정을 거쳐 양자간 상품무역협정의 일부분으로 채택한다고 규정하였다.

협정 당사국은 GATT-1994 제19조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지만, CAFTA 협정상 SG 조치가 발동 중인 경우 WTO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WTO와 FTA에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4. 평가

CAFTA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타결한 첫 번째 FTA이자 아세안 전체가 합동으로 체결한 첫 번째 FTA로서 개도국 간 FTA 체결의 중요한 시범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CAFTA는 기본협정에 이어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협정까지 단계적으로 협정을 진행하였다.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적게 취하고 많이 주며, 상호간 실익과 평등을 추구(多予少取、平等互利)’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협상 타결에 앞서 농산물 관세를 우선 낮추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중국이 FTA 협상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아세안 신규회원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경제가 낙후한 국가들에게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WTO 비회원국에도 WTO 회원국과 같이 대우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취약 품목과 식량안보상 중요한 곡물과 곡분, 당류 및 유제품과 담배 등은 양허를 제외하거나 고민감품목으로 양허하여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의 초기 회원국인 태국도 고민감품목의 관세를 2015년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FTA 추진 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목적도 중시하는 ‘중국식 FTA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민감품목의 특별취급 요구를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정치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역내 패권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내 농업부문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과 경쟁력 변화 등을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취약품목과 식량 안보상 중요 품목 등에 대한 특별 취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곡물, 사료, 육류, 과일 등 소득탄력적 농산물의 국내 수요와 수입이 증가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중국 · 칠레 FTA

3.1. 추진 배경 및 과정

중국과 칠레의 FTA 협정은 ASEAN에 이은 두 번째 FTA이자 남미국가와는 첫 번째 FTA 협정이다. 중국과 칠레는 2004년 11월 FTA 협상 개시 이후 다섯 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거쳐 2005년 10월 28일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6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3.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중국이 칠레에 10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양허한 농산물은 모두 914개로 전체 농산물 964개의 94.8%이다. FTA 발효 즉시 철폐는 220개(19.1%), 2년간 철폐는 245개(21.3%), 5년간 철폐 268개(23.3%), 10년 철폐 368개

(32.0%)로 전체 상품 양허안에 비해 10년간 균등 철폐 품목의 비율이 높았다. 10년간 철폐 품목에는 조제분유와 포도, 혼합주스 등 칠레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포함된다. 양허 제외 농산물은 50개로 농산물 전체의 5.2%였다. 양허 제외 품목에는 옥수수과 쌀, 밀, 사탕수수당, 밀가루 등 현행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이 포함된다.

표 2-21. 중국·칠레 FTA 중국 양허안(HS-2단위)

단위: 개, %

HS-2	즉시 철폐	2년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기존 무관세	합계	양허 제외	비중(%)	평균 관세율
01류	-	23	-	9	21	53	-	5.5	6.0
02류	-	4	46	29	-	79	-	8.2	17.4
04류	1	10	13	14	1	39	-	4.0	15.2
05류	6	5	13	12	4	40	-	4.1	12.2
06류	2	2	2	10	7	23	-	2.4	8.3
07류	10	90	-	-	11	111	-	11.5	10.9
08류	-	20	20	41	2	83	-	8.6	18.5
09류	8	13	18	2	-	41	-	4.3	13.9
10류	8	-	-	-	5	28	15	2.9	33.9
11류	4	2	14	6	-	36	10	3.7	25.4
12류	32	10	23	9	28	102	-	10.6	8.0
13류	5	1	6	4	1	17	-	1.8	11.4
14류	2	4	2	3	-	11	-	1.1	10.4
15류	3	8	9	10	-	49	19	5.1	15.0
16류	-	-	11	10	-	21	-	2.2	14.7
17류	2	2	5	3	-	18	6	1.9	29.9
18류	3	3	2	3	-	11	-	1.1	11.0
19류	-	4	7	11	-	22	-	2.3	19.1
20류	2	22	22	46	-	92	-	9.5	20.5
21류	1	2	3	16	-	22	-	2.3	21.9
22류	-	7	4	13	1	25	-	2.6	21.7
23류	25	-	-	5	-	30	-	3.1	5.5
24류	-	-	-	11	-	11	-	1.1	26.9
합계	114	232	220	267	81	964	50	100.0	15.4
비중(%)	12.5	25.4	24.1	29.2	8.9	100.0	-		

자료: 중국·칠레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중국의 농업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칠레와의 FTA에서 농산물 양허계획은 10년간 관세철폐 품목과 5년간 철폐 품목이 전체 양허대상 품목의 5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이상 점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즉시 철폐 및 2년 내 철폐 품목은 전체의 37.9%인 376개로 중국의 경쟁력이 높거나 현행 관세율이 낮은 품목들이 대부분이다.¹⁰ 유지종자(12류)가 32개로 평균 관세율 6%, 박류(23류)는 25개로 관세율은 2~5%이며, 채소류(07류)는 111개 모두 2년 내 철폐 품목이다.

10년 철폐 품목은 267개로 중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현행 세율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채소과일조제품(20류) 46개와 과일류(08류) 41개의 현행 관세율은 대체로 25~30% 수준이다. 육류(02류) 29개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으로 현행 관세율은 12~20% 수준이다.

양허 제외 품목은 50개이며, 중국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낮은 품목 또는 국가 식량안보상 중요한 품목으로서 현행 관세율도 매우 높은 품목들이다. 동·식물성유지(15류)는 19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율은 대부분 19.9%이다. 밀과 옥수수, 쌀 등 곡물(10류) 15개와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 곡분(11류) 10개의 관세율은 65%이다. 사탕수수당 등 당류(17류) 6개는 50%이다.

3.3. 칠레의 농산물 양허안

칠레는 과일과 채소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FTA 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이다. 칠레는 1990년대부터 6%의 단일관세 체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닭고기(02류)와 민감품목인 밀(10류), 밀가루(11류), 그리고 설탕(17류)은 국가의견(Country Comment)을 통해 기준세율(Base Rate)을 높이는 방식을

¹⁰ 종가세로 양허한 농산물(HS-8자리 기준 964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품목은 대부분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 중국과의 자유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는 농산물 972개의 97.4%인 947개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5년, 10년, 양허 제외 등 4가지 유형으로 양허하였다.¹¹ 즉시 철폐는 903개로 92.9%, 5년 철폐가 43개로 4.4%, 10년 철폐는 1개뿐이다. 양허 제외 품목은 관세율이 높은 쌀과 밀, 밀가루, 사탕수수당 등 25개로 전체 대상품목의 2.6%이다.

발효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칠레의 경쟁력이 높은 과일(08류)이 100개로 가장 많고, 채소과일조제품(20류)과 채소(07류)도 각각 93개와 90개로 비중이 높다. 중국과의 FTA에서 기준세율을 25%로 높인 닭고기(HS-0207)도 즉시 철폐로 양허되었다. 중국이 닭고기에 부과하던 종량세를 10년 철폐로 양허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이다.

5년간 철폐 품목에는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품목과 현행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들이 포함되었다. 동·식물성유지(15류) 29개는 대두유와 옥수수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 관세율은 31.5%로 높은 수준이다. 곡분(11류) 9개와 듀럼 밀 등 곡물(10류) 2개의 현행 관세율은 6%이다. 당류(17류)도 현행 관세율 6%인 당밀 2개가 포함된다.

10년간 철폐 품목은 곡분(11류) 단 한 품목뿐이다. 현행 세율 6%인 잡곡분은 10년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낮아져 2015년 무관세가 된다.

양허 제외 품목은 25개로 국가의견(Country Comment)으로 기준세율을 31.5%로 올린 밀(HS-100190)과 밀가루(HS-110100), 그리고 98%의 높은 기준세율을 적용한 설탕(HS-1701)류 16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소스 및 조제식료품(21류)도 1개 포함되어 있다. 밀과 밀가루 및 설탕을 양허 제외한 것은 중국의 생산력을 고려한 점도 있지만 98%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설탕이 칠레 농업에서 주요한 비중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¹¹ 수산물을 제외한 농림축산물 972개(HS-8단위 기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22. 중국·칠레 FTA(칠레의 양허안)

단위: 개, %

HS-2	즉시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합계	양허 제외	비중(%)	평균 관세율
01류	28	-	-	28	-	2.9	6.0
02류	84	-	-	84	-	8.6	8.5
04류	59	-	-	59	-	6.1	6.0
05류	21	-	-	21	-	2.2	6.0
06류	27	-	-	27	-	2.8	6.0
07류	90	-	-	90	-	9.3	6.0
08류	100	-	-	100	-	10.3	6.0
09류	34	-	-	34	-	3.5	6.0
10류	11	2	-	20	7	2.1	7.3
11류	19	9	1	30	1	3.1	6.9
12류	64	-	-	64	-	6.6	6.0
13류	13	-	-	13	-	1.3	6.0
14류	10	-	-	10	-	1.0	6.0
15류	30	29	-	59	-	6.1	6.0
16류	18	-	-	18	-	1.9	6.0
17류	11	2	-	29	16	3.0	25.0
18류	20	-	-	20	-	2.1	6.0
19류	27	1	-	28	-	2.9	6.0
20류	93	-	-	93	-	9.6	6.0
21류	34	-	-	35	1	3.6	6.0
22류	53	-	-	53	-	5.5	6.0
23류	43	-	-	43	-	4.4	6.0
24류	14	-	-	14	-	1.4	6.0
합계	903	43	1	972	25	100.0	6.8
비중(%)	95.4	4.4	0.1	100.0	-		

주: (국가의견)1) MFN 평균 관세율은 기본세율이다.

2) 02류의 MFN21.8은 25%

3) HS 100190과 110100의 '6%+Specificate'는 31.5%

4) HS 1701의 '6%+Specificate'는 98%

자료: 중국·칠레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3.4. 세이프가드(SG)

중국은 종전에 체결한 FTA 협정에서 세이프가드(SG) 조치를 중시하지 않았다. 중국·홍콩 인접경제동반자협정(CEPA)은 WTO 규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SG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중·칠레 FTA에서는 양자간 SG(Bilateral Safeguards)와 더불어 GATT-1994와 WTO의 세이프가드협정(Safeguard Agreement)에 따른 다자간 SG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제51조 1항). 하지만 농산물 SG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해도 농업부문에 특별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또는 기존의 양국간 및 다자간 SG 조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칠레 FTA는 SG 조치를 ‘이행기간 동안에만(during the transitory period only) 부과할 수 있다’(제44조)고 규정하였다. 중·칠레 FTA에서 SG 조치의 발동기간은 최초 1년이며, 1년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행기간 종료시 SG 조치도 해제된다(제45조). 하나의 품목에 1회 이상 SG 조치 부과가 불가능하나 이행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은 최초 SG 조치가 발동된 기간만큼 기간이 경과한 경우 두 번째 SG 조치 발동이 가능하다. 제45조 3항은 “GATT-1994 19조와 ‘SG 협정’에 따른 조치가 발동중인 품목에는 SG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WTO와 FTA에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지체될 경우 복구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는 명백한 증거에 입각한 예비 판단(a preliminary determination)에 의거하여 200일 이내의 잠정적 SG 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를 취할 수 있으나 후속 조사 결과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관세 인상분을 즉시 환불해야 한다(제47조).

SG 조치가 부과된 품목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SG 조치 발동국은 SG 조치에 따른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갖는 양허의 형태로 상호 합의된 무역자유화 보상(compensation)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1항의 요청 이후 45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

우 수출국은 이에 상응하는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2항). 이러한 상응조치는 SG 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에 따라 발동되거나 본 규정의 조항에 의해 발동된 경우, 발동 첫해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상응조치는 최소한 30일 전에 상대국에 통보되어야 하며(3항) 보상 제공 의무와 상응조치 부과 권한은 SG 조치 종료와 동시에 소멸된다(4항).

중·칠레 FTA 협정은 각주를 통해 “양국은 관세율 쿼터(TRQ)와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이 SG 조치의 허용된 형태(a permissible form of the safeguard measure)가 아님을 이해한다”고 명시하였다(Footnotes 4).

3.5. 평가

중국과 칠레는 양국 모두 농업경쟁력이 높은 편이지만 양허 제외를 상호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주곡과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식물성유지류, 그리고 경쟁력이 낮은 설탕을 양허 제외하고 있다. 칠레는 95% 이상의 품목을 즉시 철폐로 양허하였지만 주식인 밀과 밀가루 등 곡물류와 자국의 경쟁력이 낮은 당류 등을 양허 제외하였다.

중국은 경쟁력이 높은 채소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완전 철폐하기로 양허하고 과일류도 양허 제외 품목이 없다. 그러나 칠레가 품질과 가격경쟁력 모두 우위에 있는 포도 등 일부 과일은 10년간 철폐로 양허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15류 이상의 가공농산물은 많은 품목이 10년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중국은 칠레와의 FTA 협정에서 농산물 SG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양자간 FTA 협정을 농산물에 적용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엄청난 물량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가격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농산물 특별 SG 등 국내 시장 교란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긴급구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업 SG

조항 설정의 필요성과 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WTO 협정에서도 일반 SG 규정과는 별도의 농산물 특별 SG(SSG)를 제정한 것은 제조업 상품과는 달리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 시 모든 농산물에 대한 SG 적용보다 수입 급증시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발동 기준물량과 기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에서 대상품목을 부속서에 명시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과도 SG 적용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상대방국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명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상대방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SG 조항을 도입하고 있어 일정한 범위 내 민감품목에 대한 SG 확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4.1. 추진 배경 및 과정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대만은 2008년 마잉주(馬英九) 집권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왔다. 대만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국과 경제적 상생을 도모한다는 노선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대만의 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경제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마잉주 정부를 후원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ECFA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9년 마잉주 총통은 기존에 제안한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수정, 제안하였다. ECF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나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중국과 대만은 2009년 11월 ECFA가 쌍방의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10년 1월 26일 공식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5개월간 5차례 협상을 거쳐 타결하고 기본협정문 제4장 제7조에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규정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ECFA는 기본협정 성격으로 ECF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분야별 확대 협상을 개시하여 조속히 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4.2. 관세 양허

4.2.1.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대만은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한 반면 중국은 대만의 주요 수출품목인 과일과 차 등 18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여 비대칭적 협상 결과를 확보한다. 중국은 18개 양허 품목의 88.9%인 16개 품목을 EHP 발효 후 2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며, 나머지 품목은 3년 내에 관세 철폐한다.

표 2-23. 중·대만 ECFA 조기수확 프로그램(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EHP 발효 시점 기준		합계	주요 품목
	2년 철폐	3년 철폐		
03류	4		4	
04류		1	1	
06류	1		1	신선 란화
07류	1		1	신선(건조) 팥이버섯
08류	4	1	5	신선(건조) 바나나, 신선(건조) 오렌지 신선(건조) 레몬, 신선 하미과, 화롱과
09류	6		6	녹차, 우롱차, 발효 또는 반발효 홍차 발효차
합계	16	2	18	
비중(%)	88.9	11.1	100.0	

자료: 중국·대만 ECFA 협정문(중국상무부, www.mofcom.gov.cn)

4.2.2. 세이프가드(SG)

중·대만 ECFA 기본협정문 부속서 3은 조기수확 프로그램 적용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인해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 또는 직접적 경합품목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 위협이 있는 경우 수입국은 상대국에게 협상을 요구하여 쌍방이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SG 조치의 발동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고, 수입국의 산업이 입은 피해를 해소하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범위로 국한하여 최장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SG 조치 발동 시 부속서 1에서 규정하지 못한 규칙에 대해서는 쌍방이 관련 조항을 수정한 후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단,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조에서 열거한 수량제한조치 및 9조, 13조, 14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만 ECFA 협정의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항은 GATT-1994와 WTO의 세이프가드협정(Safeguard Agreement)에 따른 다자간 SG 조치와 중복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 평가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는 당사국 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양자간 교역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FTA에 해당한다.

ECFA는 협정 당사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사항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시장개방 일정은 포함하지 않은 기본협정이자 예비협정이다. 기본협정문에 ECF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품, 서비스, 투자관련 시장개방 협상을 개시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FTA 체결 시 상품, 서비스,

투자를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무역과 투자를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ECFA의 핵심인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통상 협상에서 특정 분야만 먼저 개방하는 양허안으로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민감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가 대립하고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중국이 홍콩과 아세안 등과의 협상에서 자주 구사하는 방식으로 경제대국이 소국을 배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ECFA는 중국의 경제적 실익 추구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이른바 중국식 FTA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대만이 비록 제3위의 수입대상국이지만 대만산 수입품의 대체가능성이 높아 ECFA가 절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도 중국에 유리한 분야(농산물시장과 인력시장)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적인 통상 협상의 형태를 탈피하였다. 대만과의 ECFA는 중국이 이미 체결한 중·아세안 EPA와 유사하다.

중국은 대만을 위안화 경제권에 편입시켜 위안화의 국제화를 강화하고 대만의 첨단기술을 습득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화경제권 형성을 통한 ‘차이완(Chiwan)’ 경제통합이라는 장기적 구상으로 ECFA를 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중국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중국이 ASEAN에 이어 칠레,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 협정 및 대만과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검토한 결과 관세 양허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ASEAN과 대만을 상대로 협정을 체결할 경우 조기수확 프로그램(EHP)으로 상대국에 협정의 실익을 제공함으로써 협상 진행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특

히 협상 초기에 상대국에서 협상에 임하는 동기(incentive)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만으로 협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대국을 배려하는 관행은 향후 중국 경제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국제정치적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칠레 및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강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허 제외를 비롯하여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 등 신축적인 양허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양허제외라는 비대칭적 양허안을 관철시킬 만큼 실익을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이는 뉴질랜드가 13억 인구의 세계 최대인 동시에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충분히 받아들일 조건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협상에 임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중국은 FTA 협상 상대국에 따라 정치외교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경제적 실익을 양보하기도 하지만 국제정치적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대국과는 경제적 득실을 치밀하게 반영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ASEAN이나 칠레 등 FTA 협정 체결 초기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SG) 조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SG 및 양자간 SG 외에 특별농산물SG(SASM)를 도입하고 있다. SASM 대상품목은 뉴질랜드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유와 크림, 버터, 치즈 등 낙농품 11개를 사전에 지정하고 최장 2023년까지 발동할 수 있는 발동기준 물량을 명시하였다.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12년간의 최장기간 관세철폐 대상품목인 우유와 크림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6년간 관세 감축이 진행된 2013년 중국의 낙농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뒤 부정적인 피해가 크게 나타났을 경우 양허 이행을 1년간 보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FTA 협정 포괄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ASEAN과의

FTA는 최초 기본협정에서 상품양허,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칠레와의 FTA도 상품양허에 머물렀지만 뉴질랜드와의 FTA는 처음부터 상품양허 외에 서비스와 투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FTA 상대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이라는 점도 작용하였지만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중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낮은 뉴질랜드를 상대로 상품양허는 물론, 서비스와 투자까지 포괄적 FTA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려 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구가 적은 뉴질랜드와 인력 이동에 관한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구의 해외진출 및 개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행태가 향후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하여 뉴질랜드나 칠레보다는 ASEAN이나 대만과 같이 중국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제정치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FTA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미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중국과의 FTA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정치·외교적 부분보다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 협정에서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농업부문에서 우리나라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 non-tradable concerns)과 환경보전적 기능 등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고려하여 양국의 농업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경쟁보다는 협력관계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주식 등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국가적인 동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시장 가격 급등으로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중국이 FTA 협정을 체결한 어느 국가보다도 시장이 넓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 상대국 시장을 확보

하기 위한 협상이 팽팽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협상을 시작한 FTA에서 타결되지 못하거나 타결 후에도 발효시키지 못한 전례가 전혀 없는 국가인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는 물론, 한·EU, 한·캐나다, 한·일 FTA 등 많은 국가와의 FTA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협상에 착수한 이후 국내외적 제반 요인으로 협상 진척이 늦어지거나 타결이 미루어질 경우 양허 수준이나 중국측 요구조건에 대한 수락 여부 등에 관해 파상적인 공세와 압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에서도 중국의 조기수확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선제적인 양허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자세가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협상 타결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현행 관세 수준에서도 수입이 많거나 증가하는 품목, 또는 수입 후 중간재나 원자재로 사용되어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을 과감하게 양허하는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떤 형태로든 FTA가 체결될 경우 엄청난 물량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농산물 특별 SG 등 국내 시장 교란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긴급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업 SG 조항 설정의 필요성과 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WTO 협정에서도 일반 SG 규정과는 별도의 농산물특별SG(SSG)를 제정한 것은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 시 모든 농산물에 대한 SG 적용보다 수입 급증 시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SG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발동 기준물량과 기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에서 대상품목을 부속서에 명시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과도 SG 적용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상대국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명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상대국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SG 조항을 도입하고 있어 일정한 범위 내 민감품목에 대한 SG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원산지 규정의 개념¹²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협정체결 당사국 간의 거래에서 특혜대우를 받을 대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WTO 설립협정 부속서 1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은 비특혜원산지 규정이며, 통일원산지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과는 관련이 거의 없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 당사국들은 특혜대우를 받을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협정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결정요인

1.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상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

¹² 이 절은 정인교 외(2005)의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의 내용을 필자의 동의 아래 요약 정리한 것임.

로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본 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 제공국·상표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원산지 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수출입품에 표시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각종 무역정책 수단에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으로 전자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표시 방법과 대상 및 그 확인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원산지 규정의 핵심이 된다.

최근 원산지 규정 협상은 다자적 차원과 양자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자적 차원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위한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이, 양자적 차원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특혜원산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WTO 통일 원산지규정 협상은 1994년 UR 협상의 결과로 제정된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포함된 후 1995년 5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WCO 산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HS4단위를 기준으로 총 1,241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486개 쟁점을 정리하여 1999년에 WTO로 송부하였다. 이후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WTO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관세할당, 각종 쿼터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적용될 것이다.

특혜원산지 규정은 지역무역협정 등의 결과로 인한 혜택을 역외국이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상품의 시장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특혜원산지의 기본 목적은 역외수입의 억제를 통한 역내수입 확대에 있다. 하지만 원산지 인정 규정이 엄격하면 할수록 무역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크며 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2. 원산지 인정기준

모든 FTA에서는 특혜관세의 적용과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는 통상 “당해 물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된 국가”, 즉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물품의 국적은 FTA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FTA마다 달리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FTA에서도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대부분 동일하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로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이나 광산품 등 1차 산품이 이에 해당되며, 자국산 원재료만 사용하여 가공한 물품도 이에 해당된다.

실질적변형 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을 가공·생산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가공생산품이 이에 해당된다.

실질적변형의 판정은 세번변경(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VC: Value Content) 기준과 특정(주요)공정(SP: Specific Process) 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기준들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각 기준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

는 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물품의 특성별로 병용하거나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표 3-1. 원산지 판정 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구 분	주요 장단점
세번변경 기준	· 원재료와 완제품간의 HS번호 변경여부 확인 · 신속·정확하고 객관적이거나, HS 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별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적용 곤란
부가가치 기준	· 협정문이 간단·명료하며, 협상시간 단축 · 자의적인 원가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별로 회계 기준이 상이할 경우 마찰 소지 · 기술개발비용·유통비용·상표비용 등도 원가에 포함되므로 실제 생산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 유발 ·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동되어 안정적 특혜세율 적용이 곤란
특정공정 기준	· 특정공정의 수행 여부 확인 · 객관적이거나, 빠른 속도로 출현하는 새로운 제품의 생산공정을 반영하기 곤란하여 기술발전에 걸림돌

세번변경 기준은 원재료와 제품의 HS 번호(세번) 변경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원산지결정이 신속·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¹³ 그러나 HS 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로 품목번호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적용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¹⁴ 부가가치 기준은 어느 상품의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

¹³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제3국이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HS코드가 이용되고 있다. HS체계는 상품의 분류를 위한 코드이지 원산지 규정을 정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적절한 대안이 없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FTA 원산지협정문은 전 품목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복잡한 체계를 가지게 된다.

¹⁴ 예컨대, HS8715의 경우 유모차와 그 부분품을 동시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분품을 수입하여 유모차를 제조하여도 부분품과 제품의 HS번호가 동일하여 아무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로 정하는 것이다. 협정문이 간단·명료하여 협상하기도 용이하고 규정하기에도 쉽고 간편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원가조작이 가능하여 원산지 결정에 상당한 마찰이 발생된다. 특정공정 기준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제조·가공 공정을 열거하여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므로 객관성은 확보되지만 생산공정을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각 기준별 주요 장단점을 비교·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 각 원산지 세부기준별로 내포되어 있는 모순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충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충 기준으로는 미소허용 기준(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 누적 기준(Cumulation),¹⁵ 원산지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 또는 최소공정 기준(Minimal Operation) 등이 있다. 아울러,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며, 제3국에서 선적되어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직접운송 원칙(Direct Consignment or Direct Transport)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완전생산 기준은 어느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수확하고 채취한 식물이나 광물이라든지, 혹은 한 나라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의 경우와 같이 한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가공한 완제품의 경우 원산지는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 나라에서 가공하는 경우와 같이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날 때 판정된다. 실질적 변형 기준은 세번변경(CTC) 기준, 부가가치(VC) 기준, 특정공정(SP) 기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대부분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원재료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부가가치 기준 또는 특정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¹⁵ 일부 협정에서는 Accumulation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3가지 기준을 각각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세번변경 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 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¹⁶ 예를 들어, 라이터의 원산지가 HS6단위 세번변경 기준이라고 할 때,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9613.90.1000)을 가지고 중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9613.10.0000)를 생산하는 경우 HS6단위 수준에서 세번이 변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 된다. 만약 라이터의 원산지가 HS4단위 세번변경 기준이라 한다면 이 경우 4단위 세번이 변하지 않아 원산지는 일본이 된다.

부가가치 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 공정을 수행한 나라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논리적으로는 원산지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 기준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민감하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서류제출 및 확인 등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 재료의 가격(CIF 기준)을 완제품의 가격(FOB 기준)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또 다른 기준은 특정가공공정(SP)인데 제조공정 중 특정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면, 특정공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의류는 재단을 수행한 나라가, TV는 브라운관을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가 될 수 있다.

2001년까지 체결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원산지 인정 기준을 보면,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모두 세번변경 기준(CTC)을 주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원부자재의 수입비율(MC: Import Content)을 많이

¹⁶ 한국의 세번은 총 10단위이나 세계공통의 세번은 6단위이므로 품목별 원산지 협상은 보통 세번4단위 또는 6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결정 기준

지역무역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 변경	부가가치				특정가공 공정(SP)4)
		계	MC1)	DC2)	VP3)	
관세동맹(6)	6	4	2 (40%~60%)	2 (35%~60%)	-	-
자유무역협정(87)	83	75	68 (60%~30%)	7 (60%~25%)	67	74

주: 1) MC는 당해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데 허용되는 수입부품 및 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의 상한선을 말함.

2) DC(Domestic Content)는 원산지를 부여하는 데 요구되는 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의 최소비율을 의미함.

3) VP(Value of Parts)는 역내산 부품의 포함 비율을 말함.

4) SP(Specific Process)는 특정공정의 수행여부, 즉 기술테스트를 의미함.

자료: 정인교(2009)

위에서 열거한 원산지 인정 기준은 판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역내 원산지 판정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미소 기준(De Minimis), 롤업(Roll-up) 혹은 흡수(Absorption)원칙,¹⁷ 누적(Cumulation) 조항 등이 있다.

누적조항은 생산자들이 최종제품의 특혜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특정 원산지로부터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최소허용조항과 함께 많이 이용되고 있다(표 1-3 참조). 누적조항은 크게 3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회원국 간에 수입된 부품 사용이 허용되는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일정비율 이하의 제3국산 부품 사용을 인정하는 유사누적

¹⁷ Roll-up 혹은 Absorption 원칙은 최종재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로 수입부품을 사용하였더라도 이 중간재가 역내산으로 인정되며, 중간재에 포함된 수입부품도 역내산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Diagonal Cumulation), 그리고 FTA에 의해 창설된 전체특혜지역이 단일 영토로 간주되어 그 지역내에서 이루어진 여하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이 역 내산으로 인정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조항이다.

표 3-3.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 완화 기준

지역무역협정	미소기준	누적조항			Roll-up
		Bilateral	Diagonal	Full	
관세동맹(6)	3	6	0	0	2
자유무역협정(87)	85	87	58	8	81

자료: WTO(2002)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원산지 규정은 이러한 판정 기준을 이용하여 상품의 시장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과 각 국가들마다 상이한 형태를 보여 상당한 무역장벽¹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제무역상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의 글로벌생산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더욱더 어렵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느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¹⁸ 예를 들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 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 설치되거나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간접적인 수입 제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¹⁹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 다국간에 걸쳐 수행되는 현상이 보편화되는 것인데, 이같은 현상은 비단 국가간의 상이한 비교우위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따

결국 원산지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그것이 다른 무역정책수단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에서 나오므로 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로 판정된다. 그러나 인건비나 설비 비중 측면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섬유쿼터가 적용되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에 따라 수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면 원산지 판정은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1.2. 원산지 규정 도입의 목적

원산지 규정은 그 적용 목적에 따라 크게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혜원산지 규정은 EU, NAFTA, EFTA 등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가 제공되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 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로부터의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실시할 경우 원산지의 식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 정책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된다.

특혜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 물품의 특혜관세 부여 여

론 각국의 정책적 대응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즉 지역주의는 주요 수출국 및 역내국들에게 있어 원산지 규정이 지역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고 역외국의 우회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계기로 등장하게 되었다.

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산업과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特惠무역과 관련된 원산지규정은 대체로 원산지 판정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特惠 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중요시한다. 주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은 역내 생산 및 고용확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계경제에 있어서 무역창출 등과 같은 상당한 자원배분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직접투자의 증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원산지 규정의特惠조건 충족 기준에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特惠원산지 규정은 체결상대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후 그 국가와의特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규정의 결정에 있어 우회수입 방지, 교역 확대, 외국인투자 유입 등의 목적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1. 비역내산 물품 우회수입 방지

역내무역에特惠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낮은 관세가 허용되는 바, 역외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수입(trade deflection) 방지는 원산지 규정에 있어 주요사항으로 고려된다. 양국간特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제3국의 간접적 진출로 인해 저하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국 간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중 자물쇠(Double Lock)’의 수단으로써 원산지 규정을 이용한다. 그 결과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원산지 규정의 강화는 이들 체결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역외국가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원산지를 통한 역외국의 역내국 시장접근에 대한 규정 강화는 아래에서 언급할 외국인 직접투자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

12.2. 회원국 간 교역확대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에 의거하여 역외국들의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회원국 간 교역확대를 통한 무역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회원국 간 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회원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입품이 역내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역내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혜무역협정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역외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역내교역 확대와는 상반(trade-off)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2.3. 외국인 투자 유입

체결국이 아닌 역외 국가는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인위적 경쟁력의 저하를 역내 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상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외 국가는 특혜무역협정권으로의 직접투자에 있어 원산지 규정의 내용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다. 과거 NAFTA 출범을 전후하여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했던 실례가 있다.²⁰

그러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은 우회수입방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만약 부가가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모기업으로부터의 핵심부품

²⁰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논의가 시작된 1991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협정이 발효된 1994년 이후에도 FDI의 유입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멕시코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1990~1999)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유입액	2,549	4,742	4,393	6,715	10,973	9,526	9,186	12,831	10,238	11,23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조달 한계 등으로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 오히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역외국이 무역전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인위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투자구조의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으로부터 우회수입 방지, 역내가공 및 역내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 등의 목적에 따른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주요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등 각각 어느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대 체약국가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원산지 규정을 통하여 의도하는 목적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를 수 있다. 둘째, 원산지 규정의 주요 목적으로 생각되는 우회수입 방지, 역내가공 및 역내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와 관련하여 배타성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1.3. 주요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

1.3.1. 세계 특혜원산지 규정의 유형

세계 각국의 원산지 협정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유형 즉, 유럽연합(EU)이 FTA 체결 시 활용하는 PANEURO 모델과 북미지역의 NAFTA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동아시아는 고유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없고 EU의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PANEURO 모델은 1997년 이후부터 EU와 체결하는 신규 FTA 국가들의 원산지 협정에 적용되고 있는데 유럽-지중해연합협정(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s), EU와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칠레와의 FTA 등이 있다. EFTA의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의 특혜원산지협정

에서도 PANEURO 모델이 적용되었다.

NAFTA 모델은 미국·칠레, 멕시코·코스타리카, 멕시코·칠레, 멕시코·볼리비아, 멕시코·니카라과, 멕시코·Northern Triangle(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칠레·캐나다, 멕시코·콜롬비아·베네주엘라(G-3), 한국·칠레 등의 FTA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NAFTA의 원산지 모델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원산지 규정의 모델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특혜원산지 협정은 유럽의 PANEURO 모델과 NAFTA의 모델이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지역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칠레, 일본·싱가포르(JESPA)의 원산지 협정을 보면 많은 품목이 HS4단위(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의 단순 세번변경에 기초하고 있다. AFTA와 방콕협정, 미국·싱가포르, 한국-칠레는 NAFTA의 모델인 역내 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JSEPA는 PANEURO에서 사용되는 수입원부자재가치(MC)를 도입하고 있다.

품목별로 규정되는 부가가치 기준에 있어서도 AFTA와 방콕협정의 경우 40%의 RVC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로 인정되는 간단한 형태이다.²¹ 동아시아 지역에서 NAFTA의 모델이 일반적인 이유는 FTA 경험이 일천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NAFTA를 FTA의 전형으로 보았고, 동 협정의 규정을 자국 FTA에 많이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EU는 PANEURO 모델을 주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 양자 간 특혜무역협정 논의가 급증함에 따라 PANEURO와 NAFTA 모델과 상이한 동아시아만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²¹ AFTA의 원산지 협정은 다른 지역의 협정에 비해 역내 보호 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의 본래 목적에는 부합되지 만, 회원국들 간 무역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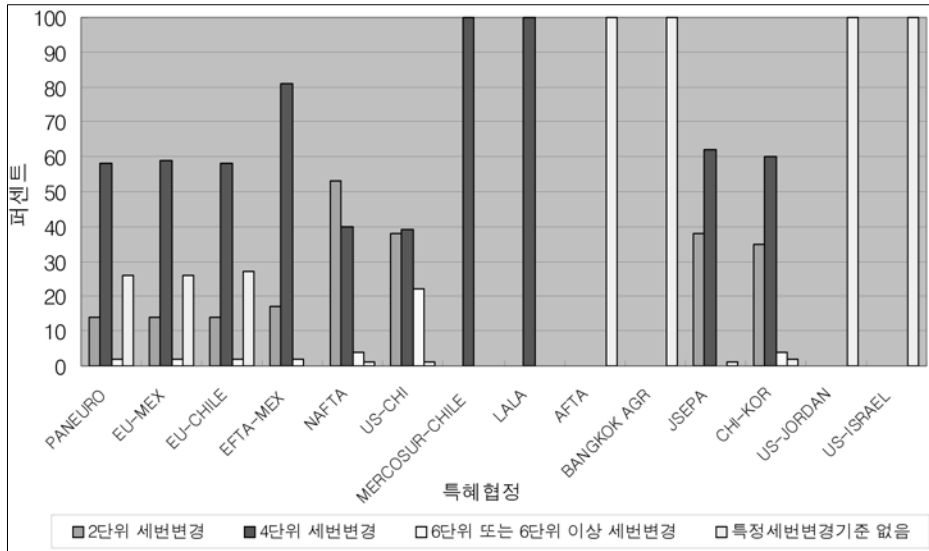
13.2. 유형별 특혜원산지 규정의 세부 특징

가. 세번변경 기준(CTC)

유럽의 경우에는 세번변경 기준(CTC)에서 HS4단위 변경방식이 특혜원산지 협정에서 주요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반면, NAFTA에서는 HS4단위 변경과 함께 HS2단위 변경 기준(CC)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특정 세번변경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가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원산지 협상이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또한 중요하게 작용함을 추측할 수 있다.²²

그림 3-1. 주요 협정별 세번변경 기준의 종류



자료: 각국의 원산지 협정안.

²² Jeffrey J. Schott (2004) pp 51~66.

한국·칠레, 일본·싱가포르의 경우, 세번변경 기준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특히 NAFTA 모델과는 달리 HS4단위 세번변경에 기초하고 있다. AFTA를 포함한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번변경 기준은 특정 세번변경 대신 VC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번변경 기준에서는 NAFTA를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이 HS2 단위나 6단위 기준보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가가치(VC)

특정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국내부가가치 비율)을 역내 부가가치(국내부가가치)라고 하며, 허용되는 수입부품 및 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의 상한을 부과하는 기준을 수입산원부자재가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의 계산 방식으로는 ‘거래가격 방식(협정에 따라서는 집적법[Build-up Method]으로 부름)’이나 ‘순비용 방식(공제법[Build-down Method]으로도 불림)’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²³ 거래가격 방식은 계산하기가 편리한 반면 ‘관계자(related persons)’ 간의 거래 시의 거래가격 왜곡 가능성 및 중간재(intermediate goods)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다. 한편 순비용 방식을 채택할 경우 상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²³ 역내부가가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 공제법: $RVC = \frac{AV - VNM}{AV} * 100$
- 집적법: $RVC = \frac{VOM}{AV} * 100$
- 순원가법: $RVC = \frac{NC - VNM}{NC} * 100$

여기서, AV는 조정가격(FOB 가격 혹은 공장도 가격)이며, VN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또한 VOM은 생산자에 의해 상품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며, NC는 제품의 순원가(net cost)를 말한다.

VC는 일반적으로 세번변경 기준(CTC)과 함께 사용되거나 혹은 세번변경 기준의 대안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VC는 크게 MC와 RVC로 구분할 수 있고, VC의 일반적 수준은 40~50%이나 PANEURO와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에서는 13~30% 정도로 낮게 부과되는 품목들도 있다.

VC를 계산하는 방법이 협정안마다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수출업자들이 원산지 규정안을 충족시킬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PANEURO 모델은 수입원부자재 가치인 MC에 기초하여 50~30%의 기준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다른 지역들의 협정안과는 달리 동일한 공장도가격(Ex-Works)에 기초하고 있다.

PANEURO 모델을 CTC(HS2단위, 4단위, 6단위 등), SP, VC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EU가 외부적으로는 개방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차별화 구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AFTA 모델의 경우에는 RVC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부가가치 기준율과 계산방식이 유럽에 비해 다양하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50~60%인 반면 이처럼 NAFTA 모델 또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PANEURO 모델처럼 복잡한 원산지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 품목 중 수송차와 소형 트럭의 경우에는 62.5% 이상의 높은 부가가치를 부과하고 있다. 수송차와 소형트럭의 변속장치(transmissions), 수송차와 소형트럭 이외의 다른 차종과 자동차부품의 부가가치 비율도 최소 60%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품목에 비해 높게 부과하고 있다. 한편 MERCOSUR의 경우에는 PANEURO 모델처럼 MC를 사용하며 계산 기준으로는 FOB를 채택하고 있다.²⁴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PANEURO와 NAFTA 모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AFTA와 방콕협정의 경우 단지

²⁴ FOB 기준의 경우 계산이 간단한 반면 이를 채택할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에 가격담합의 우려가 있음. 반면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한국·칠레 등의 부가가치 계산기준에서 사용되는 집적법(build-up)과 공제법(build-down)의 조정가격(adjusted value)은 계산상 복잡한 면이 있으나 가격담합의 우려는 없음.

표 3-4. 협정별 부가가치 기준의 특성

(단위: %)

협정명	부가가치 기준 및 제한		부가가치 계산방법
	MC	RVC	
PANEURO (50)	50~30		공장도 가격
PE-(15)	50~30		공장도 가격
EU · SA	50~30		공장도 가격
EU · MEX	50~30		공장도 가격
EU · CHILE	50~30		공장도 가격
EC · Lebanon	20~50		공장도 가격
EFTA · MEX	50~30		공장도 가격
EFTA · Chile	15~60		공장도 가격
EFTA · SINGAPORE		40~80	공장도 가격
NAFTA		50~60	50 (순비용); 60 (거래가격)
US · CHILE		35~45	35 (집적법); 45 (공제법)
CANADA · CHILE		50~60	50 (순비용); 60 (거래가격)
MEX · COSTA RICA		41.66~50	41.66 (순비용); 50 (거래가격)
MEX · CHILE		40~50	40 (순비용); 50 (거래가격)
MERCOSUR	40	60	Fob 수출가격
CAN	50		Fob 수출가격
LAIA	50		Fob 수출가격
SAFTA		30~50	Factory cost
AFTA		40	Value of content
BANGKOK		40	공장도 가격
JAPAN · SINGAPORE	40	60	수출가격
China · HongKong		30	Fob 수출가격
US · SINGAPORE		30~65	30~35 (집적법); 45~65 (공제법)
KOREA · CHILE		30~45	30 (집적법); 45 (공제법)
Taiwan · Panama		35~70	FOB
Thailand · Australia		40~55	FOB
SADC	70~35		공장도 가격
US · ISRAEL		35	Value of materials/processes

자료: 각국의 원산지규정

40%의 RVC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로 인정되는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칠레, 미국·싱가포르는 RVC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싱가포르는 NAFTA 모델의 RVC 이외에도 MC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종 생산단계만을 지역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계산에 포함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제조업 공정(특히 저부가가치 혹은 노동집약분야)의 초기 단계를 국내에서 생산한 후 나머지 공정의 일부를 주변국에 아웃소싱하여 다시 이를 수입하고 가공한 후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역외공정(Outward Processing)을 인정하여 공정의 일부를 외국에 아웃소싱하기 이전의 초기 생산단계도 최종 생산단계와 함께 지역부가가치 계산에 포함하게 된다. 싱가포르는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의 FTA 원산지 협정에서 역외공정을 모두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는 정보기술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특정 IT 부품과 메디컬 장치 등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될 경우 원산지 규정 적용대상이 안 된다. 이것은 글로벌 생산 라인의 연계성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뿐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상대우위 산업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유럽과 미주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체가 다른 지역들의 협정체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원산지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EFTA·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인정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역외국들의 유럽지역 수출은 상당한 애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역내국 간에는 교역이 확대되는 역외폐쇄, 역내개방 형태의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미주 지역은 G-3와 멕시코·볼리비아, NAFTA 등의 원산지 규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지역과 달리 협정체마다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과 미주 지역의 협정체에 비해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5. 주요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 기준

요구기준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PANEURO	EU·MEX	EU·CHI	EU PRE	EFTA-MEX	NAFTA	US-CHI	MEX-BOL	LALA	AFTA	BANGKOK	JSEPA	CHI-KOR
NC	0.4	0.4	0.4	0.2		0.5	0.5	1.0					0.5
NC+ECTC	2.4	2.0	2.4	2.4									
NC+SP	1.4	1.4	1.4	0.7			0.0						
NC+ECTC+SP	0.0	0.0	0.0	0.0									
NC+RVC	11.5	10.9	11.9	11.1						100	100		0.8
NC+ECTC+RVC	1.6	1.6	1.6	1.6									
NC+RVC+SP	0.1	0.2	0.2	0.0									
NC+WHOLLY OBTAINED CHAPTER	7.6	7.6	7.6	4.5									
NC+WHOLLY OBTAINED HEADING	0.7	0.7	0.7	0.7								0.4	
SUBTOTAL	25.7	24.8	26.2	21.2	0.0	0.5	0.5	1.0	0.0	100.0	100.0	0.4	1.3
CI													
CI+ECTC						0.0							
CI+SP					2.2								
CI+ECTC+SP													
CI+RVC													
CI+ECTC+RVC						0.0							
CI+RVC+SP													
SUBTOTAL	0.0	0.0	0.0	0.0	2.2	0.0	0.0	0.0	0.0	0.0	0.0	0.0	0.0
CTSH	0.2	0.2	0.2	0.1		1.3	16.6	2.9					1.7
CTSH+ECTC	0.0	0.0	0.0	0.0		2.5	5.6	1.4				0.1	0.5
CTSH+SP	1.9	1.9	1.8	1.9		0.0	0.1	0.0					
CTSH+ECTC-SP	0.0	0.0	0.0	0.0		0.4	0.0	0.4					
CTSH+RVC	0.3	0.3	0.3	0.4			0.4	4.2					2.1

CTSH+ECTC-RVC	0.0	0.0	0.0	0.0		0.2	0.0						0.2
CTSH+RVC+SP	0.0	0.0	0.0	0.0				0.3					
CTSH+ECTC-RVC+SP	0.0	0.0	0.0	0.0									
SUBTOTAL	0	0	0	0	0.0	4.4	22.7	9.2	0.0	0.0	0.0	0.1	4.5
CTH	33.0	33.0	32.9	36.7	58.8	17.1	23.7	17.0	100.0			45.4	46.7
CTH+ECTC	4.6	5.1	4.6	4.6	7.2	19.2	11.2	14.3				14.4	9.1
CTH+SP	0.0	0.0	0.0	0.3		0.0	0.3	0.2				0.6	0.1
CTH+ECTC+SP	6.7	6.7	6.7	6.7	9.0	0.1	0.4	1.7					
CTH+RVC	13.0	12.7	12.7	13.6	6.1	3.5	3.3	2.2				1.7	3.0
CTH+ECTC+RVC	0.4	0.9	0.4	0.4	0.3	0.6	0.5	0.9				0.1	0.5
CTH+RVC-SP	0.0	0.0	0.0	0.0		0.1		10.0					
CTH+ECTC+RVC+SP	0.0	0.0	0.0	0.0	0.0			0.9					
SUBTOTAL	0	0	0	0	0	40.6	39.5	0	100.0	0.0	0.0	62.2	59.4
CC	2.2	2.2	2.2	2.3		31.0	23.2	21.8					22.5
CC+ECTC	1.0	1.0	1.0	0.8	0.8	17.7	5.8	6.7				37.3	4.7
CC+SP	0.0	0.0	0.0	0.0	0.1	0.0	0.1	6.3					0.1
CC+ECTC+SP	11.0	11.2	11.0	11.0	15.5	5.8	8.1	6.2					5.7
CC+RVC	0.0	0.0	0.0	0.0			0.1	0.4					1.8
CC+ECTC+RVC	0.0	0.0	0.0	0.0									
CC+RVC+SP	0.0	0.0	0.0	0.0				1.2					
CC+ECTC+RVC+SP	0.0	0.0	0.0	0.0									
SUBTOTAL	14.2	2.4	2.3	2.4	16.4	54.5	37.3	42.6	0.0	0.0	0.00	37.3	34.8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NC(No Change of Classification Specified) = 세번변경 기준 제시 없음; CC(Change of Chapter) = HS2단위 세번변경 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HS4단위 세번변경 기준;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 HS6단위 세번변경 기준;
 CI(Change of Tariff Items) = 6단위 이상에서의 세번변경; ECTC(Exception to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 특정 세번변경 제외; RVC(Regional Value Content)= 역내 부가가치 기준; SP(Specific Process) = 특정공정 기준.

자료: Estevadeordal · Suominen(2003) 및 각국의 원산지협정.

다. 기타 주요 특징

1) 미소(허용) 기준

원산지 협정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주요 조항이라 할 수 있는 미소 기준(De Minimis)도 협정에 따라 다르다. EU의 특혜원산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De Minimis가 다른 지역 특히 NAFTA를 포함한 미주지역의 규정들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EU 국가들이 북미지역보다 역외산 부품활용에 관대한 편이다.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특혜원산지 협정을 보면 미소허용 기준이 모든 품목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에는 섬유와 의류를 예외 품목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섬유 총중량의 8%까지 허용하고 있다. EU·SA(South Africa)의 경우에는 여타 협정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15%를 설정하고 있으나 어류와 갑각류, 담배제품, 육류제품, 알코올성 음료에 대해서는 미소허용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한다.

NAFTA는 일반적으로 7%의 미소허용 기준을 규정하였으나 유제품,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감귤류의 과실과 주스, 인스턴트 커피, 코코아 제품, 그리고 에어컨과 냉장고 같은 일부 기계류에서는 미소허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미소허용 기준을 계산함에 있어 투입요소비용(cost of the input component)이 아닌 총 중량의 7%를 규정함으로써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seph(1993)은 미소허용 기준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의 품목이 미소허용 기준 예외조항의 영향을 받아 무역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을 것으로 주장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한국·칠레, 싱가포르·미국의 경우에는 각각 8%와 10%의 미소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AFTA, 방콕협정, 일본·싱가포르 FTA는 미소허용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칠레 원산지협정에서는 농산물품목(HS1~24류)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포함될 경우 미소허용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선 HS6단위 세번변경 요건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칠레, 미

국·싱가포르 협정에서 섬유(HS50~63)의 경우에는 각각 총중량의 최고 8%, 7%까지는 역외산 부품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롤업(Roll-up)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로 기업들은 수입부품을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수입부품의 가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중간부품을 생산했고, 다시 이 중간재를 최종재 조립에 투입하였다고 하자. 여기서 Roll-up 원칙은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면, 중간재 전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²⁵ EU의 경우에는 모든 특혜원산지 협정에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Roll-up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NAFTA에서는 자동차 산업²⁶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Roll-up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Roll-up 원칙을 제외한 주요 이유는 일본과 같은 역외 국가가 노동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 후 비역내산 부품을 수입, 가공을 해 멕시코산 표기를 하면 역내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요구로 규정되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한국·칠레,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등은 Roll-up 혹은 변형된 Roll-up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AFTA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3) 누적(Cumulation) 조항

유럽에서는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특혜원산지협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도

²⁵ 만약 역외 부품을 가공하여 생산된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중간부품 생산에 투입된 역내 부품과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Roll-down 방식이라고 한다.

²⁶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추적 요건의 예외를 부가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1997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PANEURO 모델의 누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EU의 기존 15개 회원국과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리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등 총 30개국이다. 그 결과 Pan-European 시스템하에서는 참여국 간에 거래되는 부품의 경우 역내 원산지로 인정되어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최종재는 특혜관세 적용대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EEA(EU·EFTA)와 EU·SA 간에는 완전누적이 적용되어 한 국가(single territory)로서의 개념이 적용된다.

NAFTA등 미주에서는 유럽과 같이 유사 누적이 인정되지 않고 양자 누적만 인정되고 CARICOM의 경우에는 완전 누적을 인정한다. 동아시아에서는 AFTA, 방콕협정,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한국·칠레 모두 양자 누적을 인정하고 AFTA의 경우에는 완전 누적까지 인정한다.

표 3-6. 협정별 원산지 완화 조항의 특징

PTA	미소허용 조항 (percentage)	Roll-up	누적 조항	
			Bilateral	Diagonal
PANEURO (50)	10	사용	사용	사용 (full in EEA)
PE-(15)	10	사용	사용	사용
EU·SA	15	사용	사용	ACP와는 사용 (SACU와는 완전누적기준 적용)
EU·MEX	10	사용	사용	사용안함
EU·CHILE	10	사용	사용	사용안함
EC·Lebanon	10 (expt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안함
EFTA·MEX	10 (not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안함
EFTA·CHILE	10 (expt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EFTA·Singapore	10 (expt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
NAFTA	7 (expt in agric. and ind. prod.; 7% of weight in chs. 50~63)	사용(단 자동차 산업 제외)	사용	사용안함
US·CHILE	10 (expt. im agric. and processed agr. prod.)	사용	사용	사용안함

82 원산지 규정

G-3	7 (7% of weight in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안함
MEX · COSTA RICA	7 (expt. in chs. 4~15 and headings 0901, 1701, 2105, 2202)	사용	사용	사용안함
MEX · CHILE	8 (expt. in agric. and ind. products; 9% of weight in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안함
MERCOSUR	사용안함	사용(단 자동차 산업 제외)	사용	사용안함
MERCOSUR · CHILE	사용안함	사용	사용	사용안함
CARICOM	사용안함	언급없음	사용	사용(완전누적 기준도 사용)
SAFTA	2	사용	사용	사용안함
AFTA	사용안함	언급없음	사용	사용(완전누적 기준도 사용)
BANGKOK	사용안함	사용	사용	사용안함
JAPAN · SINGAPORE	사용안함	사용	사용	사용안함 (Outward Processing allowed)
Australia · Thailand	10 (chs. 50~63: 25 of FOB for developing countries)	사용	사용	사용안함
US · SINGAPORE	10 (expt. in various agric. Products; 7% of weight in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안함 (OP and ISI allowed)
CHILES · KOREA	8 (not chs. 1~24 unless CTSH; 8% of weight in chs. 50~63)	사용	사용	사용안함
Taiwan · Panama	10 (chs. 50~63: 10 of weight)	사용	사용	사용안함
COMESA	사용안함	사용	사용	사용안함
SADC	10 (not chs. 50~63, 87, 98)	사용	사용	사용안함
US · JORDAN	사용안함	언급없음	사용	사용안함
US · ISRAEL	사용안함	사용	사용	사용안함

자료: 각국의 원산지규정

표 3-7. 지역별 원산지 조항의 주요 특징 비교

유럽 지역 (PANEURO 시스템)	미주 지역	동아시아 지역
- 가장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유럽위원회의 특혜 원산지 협정안의 조화 노력) - 역내 원산지협정안을 통일 시키기 위하여 1997년부터 PANEURO 모델 시행 -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De Minimis, Roll-up, Cumulation 조항 등을 허용하여 매우 단순하면서도 쉬운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룰 보유 - HS4단위 세번변경 기준 채택 - MC 기준채택 - 부가가치 계산방식이 다른 지역협정안과는 달리 동일한 ex-works price에 기초하고 있음 -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안이 품목별로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alternative)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 역내국가 간에는 Full Cumulation이 적용되어 single territory 개념 적용	- 엄격하면서도 복잡한 원산지협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여 역내 수출업자들의 상당한 애로 - HS2단위 세번변경을 기준으로 4단위 변경을 함께 사용 -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특정 세번변경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고 VC에 기초- 정치적 목적 - RVC 기준채택 (자동차의 경우 높은 비율 적용) - 부가가치 기준율과 계산방식이 유럽에 비해 매우 다양함. - Cumulation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bilateral Cumulation만 인정	- 유럽과 NAFTA 모델을 혼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체계임 - 다른 협정안에 비해 역내 보호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FTA의 본래 목적에는 부합되지만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의 발생 여지는 높음 - AFTA와 방콕협정의 경우 단지 40%의 RVC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로서 인정되는 간단한 형태 - HS4단위의 단순 세번변경 기준 채택 - 일반적으로 bilateral Cumulation을 인정하고 있으나 ASEAN FTA의 경우 full Cumulation을 인정함. - RVC가 일반적이거나 JSEPA의 경우 MC도 함께 사용

2. 중국 · 칠레

중국 · 칠레 FTA에서 원산지 관련 규정은 협정문 제4장과 5장에 나와 있다. 제4장은 원산지 규정에 관한 것이고 제5장은 원산지 규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원산지를 인정받는 기본적 기준은 ① 어느 한 협정 당사국의 역내 완전생산물, ② 어느 한 협정 당사국 또는 쌍방의 역내 완전생산물, ③ 역외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상품(부속서 3에 명기된 상품 제외) 등이다. 따라서 중국 · 칠레 FTA의 원산지 규정은 완전생산물과 부가가치 기준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은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2.1. 완전생산물 기준

여기서는 농림수산물 또는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중국이나 칠레 역내에서 채취된 광물
- ② 중국이나 칠레에서 수확된 식물이나 식물성 생산품
- ③ 중국이나 칠레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동물
- ④ 중국이나 칠레에서 사육된 산동물의 생산품
- ⑤ 중국이나 칠레에서 사냥된 것, 내수면 어획물
- ⑥ 중국이나 칠레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은 고기, 채취품
- ⑦ 중국이나 칠레의 선박이 EEZ 밖에서 잡은 고기나 채취품(기국주의)

2.2. 부가가치 기준

역내 부가가치 계산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RVC = \{(V - VNM) / V\} \times 100$$

여기서 RVC = %로 표시된 역내 부가가치

V = FOB 환산 당해 재화의 가치

VNM = CIF 기준 역외 부품 가치

부속서 3에 제시된 제품별 특별 기준을 적용받는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역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칠레 FTA에서는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하고 있다²⁷.

반면 다음과 같은 공정은 원산지 인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한다.

- ① 운송, 저장 과정의 품질 유지를 위한 보존
- ② 포장을 하거나 뜯는 공정
- ③ 세척
- ④ 곡물의 도정, 표백, 광택 공정
- ⑤ 설탕의 착색, 각설탕화
- ⑥ 과일, 견과류, 채소 등의 탈각, 탈피, 씨 바르기
- ⑦ 단순 절단, 제분(타기, 갈기)
- ⑧ 단순히 병, 캔, 플라스크, 백, 케이스, 박스 등에 넣는 등의 단순 포장
- ⑨ 단순 혼합
- ⑩ 도축

여기서 단순이라 함은 특별한 기술이나 설비가 이용되지 않는 공정을 말한다.

²⁷ NAFTA의 경우 거래가격 방식에서는 역내 부가가치로 60%, 순비용방식으로 50%를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2.3. 누적

어느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협정 상대국 영토에 포함(혼합)될 경우 거기에 사용된 혼합품은 후자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2.4. 미소허용 기준

부속서 3의 세번변경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에 있어서 역외 원자재 가치가 상품 부가가치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

2.5. 세트(Sets)

HS 규정 3에 정해진 세트의 경우 모든 부품의 원산지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와 역외 부품의 부가가치 비율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한다.

2.6. 원산지 규정 관련 절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절차는 원산지증명서,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이 필요치 않은 물품의 수입(예, 600달러 이하의 비상업 수입 또는 원산지증명이 요구되는 상품 이외의 상업적 수입), 원산지증명 서류의 보관, 협력, 원산지 입증, 위반에 대한 벌칙,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협정문 제5부 30조부터 43조까지).

2.7.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의 특징

농산물의 경우 수확이 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완전생산물 기준에 의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파종과 재배가 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확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하고 수확한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동물의 경우에는 역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역외에서 새끼를 들여와 사육한 경우 산동물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의 경우는 역내에서 사육된 것으로부터 얻은 것은 원산지가 인정된다. 새끼를 역외에서 수입하여 사육하고 도축한 경우 육류의 원산지는 인정된다. 사육의 명확한 정의(기간 등)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외로부터 생축을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에는 협정문 16조(완전생산물 기준) d와 19조(원산지 부여 부적합 공정) q 등으로 볼 때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완전생산물이 아닌 경우는 부속서 3에 의해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농산물(편의상 HS 3류를 제외한 1류부터 24류까지, 3류는 수산물임)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HS 20류, 21류, 23류 그리고 24류이다. HS 20류는 채소나 과실의 조제품, 21류는 기타조제식료품, 23류는 조제사료, 24류는 담배 등으로 가공된 농산물로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역내 부가가치가 50% 이상이면 원산지가 인정된다. 22류는 음료 및 주류로 HS2단위 수준의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완전생산물이 아닌 경우 위의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것 이외의 농산물은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HS4단위(호)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은 HS17류(당류, 설탕과자), 18류(코코아, 초콜렛), 19류(곡물이나 곡분의 조제품 및 빵류) 등이다.

나머지 농산물은 HS2단위(류)의 변경을 가져오면 원산지가 인정된다. 채소(HS7류)나 과일(HS8류)을 역외로부터 수입하여 채소나 과일의 조제품(HS20류)을 생산할 경우 이 조제품은 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캔에 넣거나 하는 등의 단순한 공정(협정문 19조)을 통한 세번

변경은 원산지를 인정받기에 부족하다.

표 3-8. 중국·칠레 FTA에서 품목 특정 원산지 기준(부속서 3)

류 (HS2단위) 변경기준	호 (HS4단위) 변경기준	역내 부가가치 50% 기준	역내 부가가치 50% 기준	역내 부가가치 50% 기준	역내 부가가치 50% 기준	역내 부가가치 50% 기준
Chapter 1	Chapter 17	Chapter 20	30.02	40.06	69.07	85.09
Chapter 2	Chapter 18	Chapter 21	30.03	40.07	69.08	85.16
Chapter 3	Chapter 19	Chapter 23	30.04	40.08	69.09	85.44
Chapter 4		Chapter 24	30.05	4009.11	69.10	87.02
Chapter 5		Chapter 25	30.06	4009.12	69.11	87.04
Chapter 6		Chapter 26	31.02	4009.22	69.12	87.07
Chapter 7		28.01	31.03	4010.11	69.13	87.08
Chapter 8		28.04	31.04	4010.12	69.14	87.12
Chapter 9		28.06	31.05	4010.13	70.05	89.01
Chapter 10		28.08	Chapter 32	4010.19	70.06	89.02
Chapter 11		28.09	33.02	4010.31	70.07	89.04
Chapter 12		28.10	33.03	4010.32	70.08	92.01
Chapter 13		28.11	33.04	4011.10	70.09	92.02
Chapter 14		28.12	33.05	4011.99	70.10	92.04
Chapter 15		28.15	33.06	40.12	70.11	92.07
Chapter 16		28.17	33.07	4013.10	70.13	Chapter 93
Chapter 22		28.18	Chapter 34	40.15	72.08	Chapter 94
		28.19	Chapter 35	4016.93	72.09	95.01

자료: 중국·칠레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HS10류까지는 낙농품을 제외하고 신선 농산물 또는 단순 가공품으로 볼 수 있다. 11류부터 16류까지도 단순 가공품인 경우가 많다(16류는 육류와 어류의 조제품으로 밀폐용기에 넣은 것 등 단순 가공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3류(조제사료)를 제외한 17류(당류/설탕과자)부터 24류까지를 가공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신선 농산물에 속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HS2

단위의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여 가공품보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중국·대만

중국·대만 FTA 기본협정문 부속서2는 조기수확 상품에 적용할 임시 원산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원산지를 인정 받는 기본적 기준은 ① 부속서2의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한 협정 당사국 역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② 어느 한 협정 당사국 또는 쌍방의 역내 생산자재로부터 생산된 상품, ③ 어느 한 협정 당사국 또는 쌍방이 역외 생산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으로서 부속서2의 제4조 생산품특정규칙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중국·대만 FTA의 원산지 규정은 완전획득상품과 부가가치 기준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역외 생산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은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세번변경 기준, 역내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 또는 기타 기준에 근거하여 원산지 자격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단, 부속서2의 부속서는 쌍방이 참여하는 원산지 규정 협상팀이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결정한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속서2의 부속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3.1. 완전획득상품(완전생산물)의 기준

농림수산물 또는 식품과 관련된 완전획득 상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동물
- ②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③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수확, 채적, 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

- ④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사냥, 트래핑, 낚시, 경종, 채집 또는 포획을 통해 획득한 상품
- ⑤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채굴된 광물
- ⑥ 중국이나 대만이 역내 수역, 해상(海床), 혹은 해저에서 획득한 생산품
- ⑦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 등록된 가공선박에서 ⑤의 상품을 이용하여 가공, 제조한 상품
- ⑧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가공과정 중 생산되고 오로지 원재료 회수에 사용된 폐재료 또는 역내에서 소비 후 수집되고 오로지 원재료 회수에만 사용된 폐품
- ⑨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①~⑧에서 언급한 상품으로부터 획득한 상품

3.2. 부가가치 기준

역내 부가가치(RVC)는 다음과 같이 거래가치방식에 따라 계산한다(협기본협정문 부속서2 제6조).

$$RVC = \{(TV - VNM) / TV\} \times 100\%$$

여기서 RVC = %로 표시된 역내 부가가치

TV = FOB 환산 당해 상품의 거래가치

VNM = 역외 생산자재 가치(CIF 환산 가치)

3.3. 세번변경 기준

세번변경 시 상품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역외 생산자재는 중국이나 대만 또는 쌍방 역내에서 생산을 거친 후 일률적으로 반드시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가 규정하는 세번변경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3.4. 가공공정 기준

상품이 중국이나 대만 또는 쌍방 역내에서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가공공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산지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원산지 불인정 공정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단순 가공 혹은 처리는 미소가공으로 인정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① 상품의 운송이나 저장기간 중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진행하는 처리 (예를 들어 통풍, 건조, 냉장, 냉동, 주유, 부식방지 칠, 가염, 수용액 추가 등)
- ② 탁송의 편리를 위한 상품의 해체, 조립
- ③ 판매나 전시 목적의 포장, 포장 해체 또는 재포장 등 처리
- ④ 동물의 도축, 냉동, 분할, 절단
- ⑤ 여과, 선별, 분류, 등급, 조합, 종단, 구부림, 휨, 전개 등의 작업
- ⑥ 세탁, 청결, 먼지제거, 산화물제거, 기름제거, 칠제거 등
- ⑦ 간단한 칠, 광택, 날카롭게 함, 연마, 절단, 조립, 해체 등 작업
- ⑧ 병포장, 캔포장, 주머니포장, 상자포장, 갑포장, 종이 또는 나무 널빤지에 고정시키거나 그와 유사한 포장 공정
- ⑨ 상품이나 그 포장에 표지, 라벨, 표식 및 그와 유사한 구별 표기의 부착 또는 인쇄
- ⑩ 희석, 용해 혹은 간단한 혼합, 상품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
- ⑪ 쌀 이외 곡물의 껍질 제거, 부분 또는 완전한 표백, 광택
- ⑫ 식용 당의 염색 또는 각사탕 형성 조작
- ⑬ 방직품의 다림질, 평평하게 만들기
- ⑭ 과일, 견과 및 채소의 껍질 제거, 씨제거, 겨제거

3.5. 누적 규정

중국이나 대만 역내 생산자재가 상대국 상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그 생산자재는 상대국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3.6. 미소허용 기준

상품이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에서 규정한 세번변경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 ① 세번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역외 생산자재에 대해서 역내 부가가치가 당해 상품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② 당해 상품이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모든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3.7. 교환가능 생산자재

상품의 원산지 규정 시 상호 교환이 가능한 모든 생산자재를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고, 수출국 공인회계원칙이 승인한 재고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처리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체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선택된 재고관리방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상품 또는 생산자재에 대해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3.8. 중립성분

상품의 원산지 규정 시 다음과 같은 중립성분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① 연료, 에너지, 촉매제, 용제
- ② 상품 실험이나 검사에 사용하는 설비, 장치 및 관련 용품
- ③ 장갑, 안경, 구두, 의복, 안전설비 및 용품
- ④ 공구 및 주형(거푸집)
- ⑤ 설비 및 건축의 보호에 사용하는 예비부품 및 자재
- ⑥ 상품 생산과정에서 사용하지만 당해 상품의 구성 성분이 아닐지라도 당해 상품 생산과정 일부분을 합리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타 상품

3.9. 세트(Sets)

세트를 구성하는 각 상품의 원산지가 모두 협정 당사국 일방인 경우 당해 세트의 원산지는 당해 국가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일부 구성 상품의 원산지가 당해 국가가 아닌 경우 역외 생산자재의 가격이 세트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트의 원산지는 당해 국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3.10. 포장재료 및 용기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 만약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가 당해 상품과 동일 세번인 경우 원산지 확정 시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단, 반드시 역내 부가가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확정 시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를 역내 재료 혹은 역외 재료로 인정한 후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상품의 원산지 확정시 상품 운송에 사용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3.11. 부품, 예비용품 및 공구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가 규정하는 원산지 세번변경 기준에 대해서 상품 수입 시 상품의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 등 당해 상품과 함께 세관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당해 상품과 세번이 동일하지만 단독으로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 당해 상품의 원산지 확정 시 이들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반드시 역내 부가가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 만약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 등 당해 상품과 함께 세관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당해 상품과 세번이 동일하지만 단독으로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 당해 상품의 역내 부가가치 성분 계산 시 이들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의 가치는 실제 상황에 맞게 역내 재료 혹은 역외 재료로 인정한 후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의 수량과 가치는 당해 상품의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3.12. 직접운송

특혜관세 대우의 적용을 신청한 협정 당사국 일방의 원산지 상품은 쌍방 간에 직접 운송해야 한가고 규정하였다.

상품이 쌍방 역내 이외의 하나 또는 다수의 제3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제3국에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혹은 임시 저장보관하더라도 만약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쌍방 간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 ① 지리적 원인 또는 운송상의 필요
- ② 당해 상품이 제3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거나, 판매 또는 소비되지 않은 상황
- ③ 분해 및 조립, 재포장 혹은 상품으로 하여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처리를 제외하고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의 상황 하에서 상품이 제3국에서 임시 저장 및 보관된 시간이 제3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상품이 제3국에 머무르는 기간에 반드시 제3국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위의 상황에서 언급된 상품에 대해서 수입 신청 시 중간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 문건 및 수입국 관세당국이 인가한 기타 증명 문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3.13. 원산지 규정 관련 절차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원산지 규정 실시 절차는 쌍방이 참여하는 원산지 규정 협상팀이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결정한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4. 중국 · 아세안

중국 · 아세안 FTA의 상품무역 협정문 제5조는 상품무역 협정문에서 언급된 상품과, 기본협정문에서 언급된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규칙과 증명 절차를 부속서(ANNEX)3에서 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상품무역 협정문의 부속서(ANNEX)3에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정의(규칙1), 원산지표준(규칙2), 완전생산물(규칙3), 불완전생산물(규칙4), 원산지 누적규칙(규칙5), 특정생산품의 원산지표준(규칙6), 최저한도의 조작 및 가공(규칙7), 직접운송(규칙8), 포장의 처리(규칙9), 부속물, 예비부품 및 공구(규칙10), 중립요인(규칙11), 원산지증명(규칙12), 심사 및 수정(규칙13) 등 13가지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4.1. 완전획득상품(완전생산물)의 기준

상품무역 협정문의 부속서(ANNEX)3의 규칙3은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간 상품무역에서 적용할 원산지 규정 중 완전생산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①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내에서 수확, 채집 또는 수집한 식물 및 식물 생산품
- ②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동물
- ③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생산품
- ④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내에서 사냥, 트래핑, 낚시, 수생양식, 수집 또는 포획을 통해 획득한 생산품
- 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내 영토, 수역, 영해 및 해저에서 추출 또는 획득하고 1)과 4)에 속하지 않는 광물질 또는 기타 천연생성 물질
- ⑥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내 수역 이외의 수역, 해상 혹은 해저에서 획득한 생산품. 단,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개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⑦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에 등록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국적의 배가 공해상에서 포획한 어류 및 기타 해산물
- ⑧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에 등록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국적의 가공 선박에서 가공 및 ⑦항의 생산품을 제조하여 획득한 생산품
- ⑨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에서 수집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회복 및 수리도 불가능하며 폐기 혹은 원재료 부분품의 회수에 사용하거나 재생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⑩ ①항에서 ⑨항까지 열거한 생산품을 이용하여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에서 가공하여 획득한 생산품

4.2. 부가가치 기준

상품무역 협정문의 부속서(ANNEX)3의 규칙4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상품무역에서 적용할 원산지 규정 중 부가가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①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원산지인 성분이 적어도 40% 이상인 생산품
- ②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외가 원산지인 재료, 부속품, 생산물의 총가치가 획득 또는 생산된 생산품 FOB가치의 60%를 초과하지 않고, 최종 생산공정이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국경 내에서 완성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내 원산지 성분(CAFTA contents) 40%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역외 생산자재 가치} + \text{원산지 미확정 생산자재}}{\text{FOB환산당해 상품의 거래가치}} \times 100\% < 60\%$$

$$\text{CAFTA 성분 함량} = 100\% - \text{역외 생산자재} = \text{최소 40\%}$$

역외 생산자재의 가치는 수입 시 재료의 CIF 가격 또는 재료에 대해 가공처리를 진행한 역내 국가의 국경 내에서 최초로 확정 구매한 원산지 미확정 생산자재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원재료의 원산지가 특정 국가로 인정되면 원산지 국가와 원재료를 가공하여 생산품을 만든 국가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4.3. 누적 규정

상품무역 협정문의 부속서(ANNEX)3의 규칙5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상품무역에서 적용할 원산지 규정 중 누적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 규정을 제외하고 역내에서 가공 성형된 상품은 원산지 규칙2의 원산지 관련 요구를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원산지의 누적된

성분의 가치가 최종 생산품 가치의 40%를 초과하기만 하면 해당 국가를 상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이나 대만 역내 생산자재가 상대국 상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그 생산자재는 상대국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4.4. 특정 상품의 원산지 기준

상품무역 협정문의 부속서(ANNEX)3의 규칙6은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내에서 변형을 거친 생산품은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4.5. 미소공정 기준

상품무역 협정문의 부속서(ANNEX)3의 규칙7은 다음 열거한 사항과 같은 목적으로 단일 또는 조합하여 조작 혹은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최저한도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상품이 어느 한 국가 원산지의 완전 생산물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데 참고사항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①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한 상품의 양호한 보존 확보
- ② 선적 또는 운송
- ③ 판매를 위한 포장 또는 전시

4.6. 직접 운송 원칙

상품무역 협정문의 부속서(ANNEX)3의 규칙8은 다음 열거한 사항과 같은 경우 역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 ① 생산품이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여 운

송된 경우

- ② 생산품이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외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경우
- ③ 생산품이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중 1개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또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외 다수의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지만 상품이 국경 통과 국가의 선박으로 선적되거나 임시 저장되지 않은 경우. 단, 반드시 다음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국경 통과가 지리적 원인 또는 특수한 운송상의 요구 때문인 경우
 - 상품이 시장 유통 또는 소비 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의 양호한 보존상태를 위해 진행하는 필수적인 하역과 선적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에서 기타 다른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4.7. 포장의 처리

상품무역 협정문의 부속서(ANNEX)3의 규칙9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상품무역에서 적용할 원산지 규정 중 상품 포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수입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역내 한 국가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과 포장에 대해서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 그 포장에 대해서 별도로 원선지를 판정한다.
- ② 상품 전체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경우 ①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포장을 상품과 일체로 보는 경우 상품의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한 포장이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역외로부터 수입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4.8. 부속물, 예비부품, 공구

상품무역 협정문의 부속서(ANNEX)3의 규칙10은 역내 수입국이 부속

물, 예비부품, 공구 및 관련 재료를 상품과 동일한 종류로 분류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부속물, 예비부품, 공구 및 관련 재료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9. 원산지 규정 관련 절차

상품무역협정문 부속서(ANNEX)3의 규칙12는 상품 수출국 정부기구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상품만이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3의 첨부A에서는 원산지 규정 관련 절차로 수출 이전 검사,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 서류의 보관, 특별사례,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총 22개 조항).

5. 중국 · 뉴질랜드

중국 · 뉴질랜드 FTA에서 원산지 관련 규정은 협정문 제4장에 나와 있다. 이중 1절은 원산지규정에 관한 것이고 2절은 원산지 규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원산지를 인정받는 기본적 기준은 ① 어느 한 협정 당사국의 역내 완전생산물, ② 어느 한 협정 당사국 또는 쌍방의 역내 완전생산물, ③ 역외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 세번 변경 기준과 역내 부가가치가 30% 이상인 상품(부속서 5에 명기된 상품) 등이다. 따라서 중국 · 뉴질랜드 FTA의 원산지 규정은 대체로 완전생산물과 세번 변경 기준을 근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 완전생산물 기준

여기서는 농림수산물 또는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① 당사자의 영토에서 재배, 수확, 채취된 식물성 생산품
- ② 당사자의 영토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동물
- ③ 당사자의 영토에서 사육된 산동물의 생산품
- ④ 당사자의 영토에서 수렵, 딛사냥, 어획, 양식, 채취된 제품
- ⑤ 당사자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또는 당사자의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제품(어류, 조개류, 식물 및 여타 해양생물)

5.2. 부가가치 기준

부속서 5에 명기된 상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RVC = \{(FOB - VNM) / FOB\} \times 100$$

여기서 RVC = %로 표시된 역내 부가가치

FOB = FOB 환산 당해 재화의 가치

VNM = CIF 기준 역외 부품 가치

부속서 5에 제시된 상품의 제품별 특별 기준에 따르면,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역내 부가가치기준으로 30%, 40%, 45%, 및 50%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속서5를 살펴보면, 부가가치 기준은 소수의 세번(HS 320611, 330112, 330125, 340213)을 제외하고 대부분 세번변경 기준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공정은 원산지 인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한다.

- ① 건조, 냉동, 통풍, 냉각 등과 같이 운송 및 저장 중에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공정
- ② 감별, 분류, 등급화, 선별, 세척, 절삭, 절단, 벤딩, 감기 및 풀기 등과 같은 단순 공정
- ③ 배송물의 분해 및 조립
- ④ 포장의 해체, 조립 및 재조립
- ⑤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와 같은 단순 포장 공정
- ⑥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⑦ 제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단순 희석
- ⑧ 쌀 이외의 곡물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⑨ 당류의 착색이나 각설탕 공정

여기서 단순이라 함은 특별한 기술이나 설비가 이용되지 않는 공정을 말한다.

5.3. 누적

어느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협정 상대국 영토에 포함(혼합)될 경우 거기에 사용된 혼합품은 후자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5.4. 미소허용 기준

부속서5의 세번변경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에 있어서 역외 원자재 가치가 상품 부가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

5.5. 세트(Sets)

세트와 관련된 규정은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6. 원산지 규정 관련 절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절차는 협정문 제4장의 2절(33조에서 43조까지)에 정해져 있다. 특혜부여(제34조), 관세환급(제35조), 원산지증명서(제36조), 원산지확인서(제37조), 원본 서류의 변경(제38조) 및 보관(제39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제40조) 및 입증(제41조), 특혜조치의 거부(제42조), 원산지 규정 절차에 대한 검토(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7조는 1,000달러 금액의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대신에 원산지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관련 사항은 제5장에 정해져 있다.

5.7.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의 특징

농산물(편의상 HS3류를 제외한 1류부터 24류까지. 3류는 수산물임)의 경우, 원산지인정 기준으로 역내 완전생산물 기준과 세번변경 기준이 주로 적용되고 부가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먼저 완전생산물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산동물과 식물성 상품이 있다. 산동물의 경우(1류)는 역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역외에서 새끼를 들여와 사육한 경우 산동물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곡물의 경우(10류) 수확이 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완전생산물 기준에 의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파종과 재배가 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확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물성 산품에 비해 산동물에 적용되는 완전생산물 기준이 더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완전생산물 기준이 적용되는 세번에는 2201(물 등)이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의 농산물의 원산지 인정은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세번변경 기준의 적용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HS4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한하여 HS6단위가 적용된다. 즉, 동물성 생산품(2류)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에는 HS4단위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단, 단순공정에 의한 세번변경은 제외한다. 예컨대 0201(냉장 쇠고기), 0202(냉동 쇠고기), 0204(면양과 산양의 고기), 0210(육과 식용설육)세 번에 대해서는 도축으로는 원산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HS6단위가 적용되는 세번으로는 0601과 0602 일부 품목(산 수목 등)과 0901, 0904, 0906 일부 품목(커피, 후추 및 고추, 계피 등) 등이 있다. 또한 090121, 090122, 090190과 같은 일부 커피 세번에 대해서는 세번 변경 기준(HS6단위)과 함께 부가가치 기준(40%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090121세번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호에서든 090121세번으로 세번변경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역내 가치비중(RVC)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표 3-9. 중국·뉴질랜드 FTA의 농산물 원산지 기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1부	01류	산동물	
		01.01~01.06	당사자의 영토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경우
	02류	육·식용 설육 (02.01, 02.02, 02.04, 02.10의 경우, 도축은 제외)	
		02.01~02.10	어떤 류에서든 02.01~02.10로 변경한 경우.
	0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2부		04.01~04.10	어떤 류에서든 04.01~04.10로 변경한 경우.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5.01~05.11	어떤 류에서든 05.01~05.11로 변경한 경우.
식물성 생산품			
제2부	06류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0601.10~0602.29	어떤 소호에서든 06.01.10~06.02.29로 변경한 경우.

		06.03~06.04	어떤 호에서든 06.03~06.04로 변경한 경우
	07류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7.01~07.10	어떤 류에서든 07.01~07.10로 변경한 경우.
		07.10~07.13	어떤 호에서든 07.10~07.13로 변경한 경우
		07.14	어떤 류에서든 07.14로 변경한 경우
	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08.12	어떤 류에서든 08.01~08.12로 변경한 경우.
		08.13~08.14	어떤 호에서든 08.13~08.14로 변경한 경우
	09류	커피, 차, 마태, 향신료	
		0901.11~0901.12	어떤 류에서든 0901.11~0910.12로 변경한 경우.
		0901.21~0901.90	어떤 소호에서든 0901.21~0901.90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역내 가치비중(RVC)이 40% 이상인 경우
		09.02~09.03	어떤 류에서든 09.02~09.03로 변경한 경우
		0904.11,0904.12, 0906.11,0906.19	어떤 류에서든 0904.11,0904.12,0906.11,0906.19로 변경한 경우
		0904.12,0906.20	어떤 소호에서든 0904.12,0906.20로 변경한 경우
		0905,0907~0910	어떤 류에서든 0905,0907~0910로 변경한 경우
	10류	곡물	
		10.01~10.08	역내에서 수확이 이루어질 경우
	11류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11.01~11.09	어떤 류에서든 11.01~11.09로 변경한 경우.
	12류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12.01~12.14	어떤 류에서든 12.01~12.14로 변경한 경우.
	13류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01~13.02	어떤 류에서든 13.01~13.02로 변경한 경우.
	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14.01~14.04	어떤 류에서든 14.01~14.04로 변경한 경우.
제3부		동물성의 유지 및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류	동·식물성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5.01~15.22	어떤 류에서든 15.01~15.22로 변경한 경우.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 식초,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16.05	어떤 류에서든 16.01~16.05로 변경한 경우.
	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	어떤 류에서든 17.01로 변경한 경우.
		17.02~17.04	어떤 호에서든 17.02~17.04로 변경한 경우.
	18류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18.01	어떤 류에서든 18.01로 변경한 경우.
		18.02~18.06	어떤 호에서든 18.02~18.06으로 변경한 경우.
	19류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19.01~19.05	어떤 류에서든 19.01~19.05으로 변경한 경우.
	20류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20.01~20.06	어떤 류에서든 20.01~20.06로 변경한 경우.
		20.07	어떤 호에서든 20.07로 변경한 경우.
		20.08~20.09	어떤 류에서든 20.08~20.09로 변경한 경우.
	21류	각종 조제식료품	
		21.01	어떤 류에서든 21.01로 변경한 경우
		21.02~21.06	어떤 류에서든 21.02~21.06로 변경한 경우.
	22류	음료, 알코올, 식초(2208.90을 제외한 22.08의 경우, 단순희석은 제외)	
		22.01	역내에서 획득된 경우
		22.02~22.03	어떤 호에서든 22.02~22.03로 변경한 경우.
		22.04	어떤 류에서든 22.04로 변경한 경우.
		22.05~22.09	어떤 호에서든 22.05~22.09로 변경한 경우.
	23류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23.01, 23.03	어떤 류에서든 23.01, 23.03로 변경한 경우.
		23.02, 23.04~23.09	어떤 호에서든 23.02, 23.04~23.09로 변경한 경우.
	24류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어떤 류에서든 24.01로 변경한 경우.
		24.02~24.03	어떤 호에서든 24.02~24.03로 변경한 경우.

6. 중국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의 특징

원산지를 인정받는 기본적 기준으로 협정 당사국의 역내 완전생산물과 역외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 역내 부가가치 또는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과 세번변경 기준은 협정 대상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결정되어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보다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 30~40%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가치 및 세번변경 기준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미소허용 기준, 누적 기준 등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 FTA 협상에서 농산물에 적용한 부가가치 기준은 칠레와의 FTA에서는 50%,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40%이다.

완전생산물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산동물과 식물성 상품이 있다. 식물성 상품의 경우 수확이 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완전생산물 기준에 따라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파종과 재배가 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확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하고 수확한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는 역내에서 사육된 것으로부터 얻은 것은 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중국·칠레, 중국·뉴질랜드)와 동물이 역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되어진 산동물로부터 얻어진 축산물로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된다(중국·대만, 중국·아세안). 역외에서 산동물을 수입하여 사육하고 도축한 경우 사육의 명확한 정의(기간 등)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외로부터 생축을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에는 협정문 16조(완전생산물 기준) d와 19조(원산지 부여 부적합 공정) q 등으로 볼 때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물성 상품에 비해 산동물 등 축산물에 적용되는 완전생산물 기준이 더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완전생산물 기준이 적용되는 세번에는 2201(물 등)이 있다.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완전생산물이 아닌 경우 농축산물은 대부분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부가가치 기준은 세번변경 기준에 추가적인 조

건으로 적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부가가치 산정방식은 비역내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제법’이 적용된다. 중국·칠레 FTA에서 역내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HS 20류, 21류, 23류 그리고 24류이다. 그러나 중국·뉴질랜드 FTA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HS9류의 일부 품목에서 세번변경 기준이 결합되어 적용된다.

중국·칠레 FTA에서 완전생산물이 아닌 경우 위의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것 이외의 농산물 가운데 HS17류(당류, 설탕과자), 18류(코코아, 초코렛), 19류(곡물이나 곡분의 조제품 및 빵류) 등은 4단위 기준이고 나머지 농산물은 HS2단위(류) 기준이다. 대부분 HS2단위 변경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S10류까지는 낙농품을 제외하고 신선 농산물 또는 단순 가공품으로 볼 수 있다. 11류부터 16류까지도 단순 가공품인 경우가 많다(16류는 육류와 어류의 조제품으로 밀폐용기에 넣은 것 등 단순 가공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2류(조제사료)를 제외한 17류(당류/설탕과자)부터 24류까지를 가공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신선 농산물에 속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HS2단위의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여 가공품보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뉴질랜드 FTA에서 세번변경 기준의 적용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HS2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한하여 HS4단위 또는 6단위가 적용된다. 축산물(01류부터 05류까지)의 경우 모두 HS2단위 변경기준이 적용된다. HS6단위가 적용되는 세번으로는 0601과 0602 일부 품목(산 수목 등)과 0901, 0904, 0906 일부 품목(커피, 후추 및 고추, 계피 등) 등이 있다. 또한 090121, 090122, 090190과 같은 일부 커피 세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 기준(HS6단위)과 함께 부가가치 기준(40%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090121세번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호에서든 090121세번으로 세번변경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역내 가치비중(RVC)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HS4단위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신선 농산물 가운데에서는 06류(산수목/꽃), 07류(채소), 08류(과실)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가공식품이다. 중국·뉴질랜드 FTA에서는 중국·칠레 FTA보다 HS2단위 변경 기준이 보다 포괄적으로 도입

되어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협상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가 맺은 FTA 원산지 기준에서 ‘재배되고 수확된(grown and harvested)’ 경우에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표현이 채택되어 있다.²⁸ 농산물 순수입국 입장에서는 ‘수확된 것’보다 강화된 개념의 ‘재배되고 수확된’의 개념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채소, 과일 및 곡물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실익이 없으나, 화훼류의 경우에는 단순 이식한 후 수확해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산 동물의 경우 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born and raised)’ 경우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육류, 유제품 등 축산물의 경우에는 ‘당사국에서 사육된(raised) 동물로부터 획득한 제품’ 또는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로부터의 상품’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출생 및 사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와 사육에 국한하는 경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칠레, 싱가포르, EFTA, 인도 등과의 FTA에서는 출생 및 사육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축산업 강국인 미국, EU와의 협정에서는 사육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향후 추진될 협상에서는 출생 및 사

²⁸ 한·칠레 FTA 제4.1조 (vegetable goods, as defined in the Harmonised System, grown and harves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한·싱가폴 FTA 제4.1조 (plants and plant products grown an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there), 한·EFTA FTA Annex I 제4조 (vegetable products grown harvested or gathered there), 한·미 FTA 제6.22조 (plants and plant products grown, and harvested or gather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한·EU FTA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제4조 1항 (vegetable products grown and harvested there), 한·인도 FTA 제3.3조 (plants and plant products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after being grown there).

육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만, ASEAN과의 협상에서, 일본은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터키는 사육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미소허용 기준은 우리나라 가공식품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출품과 수입품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에 있어서도 배제된 경우가 있으나 농업 강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일부만 배제되었고 EU와의 협상에서는 배제되지 않았다. 한·칠레 FTA에서는 미소허용 기준을 8%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비원산지재료가 최종제품과 같은 소호에 분류되는 경우)하에 최소 허용 수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한·싱가포르의 경우 미소허용 기준은 10%이며 농산물에 대해 적용을 배제한다. 한·인도 FTA도 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한·EFTA FTA의 경우 미소허용 기준은 10%이지만 농산물에도 적용된다. 한·미 FTA의 경우 미소허용 기준은 10%이고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낙농제품(HS4류), 채소류(HS7류), 쌀제품(HS1006호, HS11류), 감귤류(HS0805), 주스류(HS2009.11-39), 복숭아·배 및 살구류(HS8류, 29류), 동·식물성유지(HS15류), 설탕(HS17류) 등이다. 한·EU FTA의 경우 미소허용 기준은 10%이고, 농산물에도 적용된다.

농산물의 경우 세번변경 기준은 HS2단위 변경을 기본으로 하는 NAFTA 방식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번변경 기준은 HS2단위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일부 가공식품 등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4단위나 6단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국가 가운데에도 HS2단위 변경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류에 대해 4단위 또는 6단위 변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공식품 가운데에서도 수입이 수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HS2단위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부 품목별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1. 동식물위생 조치의 개념

농산물 교역은 관세장벽 이외에 교역 관련 기술규정에 의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WTO 농업협정과는 별도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 협정)이 채택되었다. WTO 회원국들의 동식물위생 및 검역 조치는 이 협정문에 의해 규율이 되고 있다.

동식물위생 및 검역 조치는 GATT 1994 제20조(일반적 예외)에 의해 GATT 기본원칙²⁹ 등의 적용이 면제된다.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서는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예외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것은 GATT 제20조 (b)항으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²⁹ GATT 기본원칙은 일반적으로 ① 최혜국대우, ② 내국민대우, ③ 호혜대우(이상을 비차별원칙이라 함), ④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⑤ 보호수단으로서 관세 허용 등을 의미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dex 위원회; Codex Alimentarius), 국제수역사무국(OI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Office of the Interan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등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에 조화된 SPS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SPS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2. 중국 · 칠레

협정문 7장 제53조부터 59조까지 SPS 관련 합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중요한 부분은 제56조(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에서 GATT의 SPS 협정을 양국 간의 SPS 조치 협정에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SPS 조치 도입의 목적으로 동식물 및 동식물성 상품의 교역 촉진, WTO SPS 협정 이행의 발전, SPS 조치와 SPS로 인한 교역 문제 그리로 교역 증진을 위한 토론회 제공, SPS 이슈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틀 제공 등을 들고 있다.

중국 · 칠레 FTA 협정은 WTO SPS 협정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 사항은 WTO SPS 협정에 규정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의 금지
- ② 조치의 조화를 위한 노력
- ③ 과학적 근거에 의한 조치
- ④ 지역적 조건의 적용
- ⑤ 투명성

양국은 SPS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협정문 제58조(SPS 위원회)는

협정문 7장의 SPS 조치 도입의 목적 달성을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SPS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양측의 합의가 없는 한 1년에 최소한 1차례 개최되며, 실무 기술그룹을 설치한다. 위원회다음과 같은 포럼을 제공한다.

- ① SPS 조치 및 규제 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②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PS 조치의 적용이나 발전 관련 자문
- ③ WTO SPS 위원회, Codex 위원회, IPPC, 국제 동물 건강 기구 등 관련 각종 국제 또는 지역 포럼의 회의 의제, 입장, 이슈에 대한 컨설팅
- ④ 기술협력 프로그램 조정
- ⑤ WTO SPS 협정 이행 관련 상호 이해 제고
- ⑥ 양국 검역 관련 기관 사이에 제기된 문제의 진전에 대한 검토
- ⑦ 분쟁에 대한 협의 개최

3. 중국 · 대만

기본협정문 제2장 제3조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내용에 SPS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중국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문 제7조에서 비관세조치, TBT, SPS조치, 보조 및 반보조 조치, 반덤핑조치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은 WTO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중국·뉴질랜드

SPS 관련 합의 내용은 협정문 7장 제73조부터 88조까지 수록되어 있다. 먼저 SPS 관련 합의의 목적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교역 촉진에 있음 명시하였다. 또한 동 조항들은 WTO SPS 협정과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기초로 양자 간 SPS 이슈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절차와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협정문 7장에서는 위험분석(제79조), 지역적 조건의 반영(제80조), SPS 조치의 상호 동등성의 인정(제81조), 검증(제82조), 인증(제83조), 수입검사(제84조), 협력(제85조), 통보(제86조), 정보교환(제87조)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각국의 소관관청(Competent Authorities) 및 접촉창구(Contact Points)와 양국의 공동 관리 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에 대한 규정을 제78조와 88조에 담고 있다.

제 88조에 의하면 공동 관리 위원회는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설치하며 1년에 최소한 1차례 개최된다. 동 위원회는 SPS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논의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작업계획(work plans)의 설정, 감독, 재검토
- ② 실무기술그룹(technical working groups)의 설치
- ③ 이행안(Implementing Arrangements)의 발의, 개발, 재검토 및 수정
- ④ 양자무역에 관련된 SPS 정보의 교환
- ⑤ WTO SPS 위원회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중요 SPS 이슈에 대한 조정
- ⑥ 양자무역에 있어서 SPS 이슈의 해결을 위한 협의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은 SPS 협정에서 특히 양자 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양자간 SPS 조치의 상호 동등성의 인정(Equivalence)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81조(동등성)에서 수출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를 달

성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정문 제80조(지역적 조건의 반영)에서는 양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은 각국의 영토의 일부분을 병해충 또는 질병에 대한 안전 지역 또는 저발생 지역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부분의 협정이 WTO SPS 규정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었다. FTA 체결 당사국간의 SPS 관련 분쟁,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을 위해서는 공동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이 설치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표 4-1. SPS 요약

		협 정 포 함	WTO/SP S 협정 ^a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국	칠레	○	GATT SPS 조치수용	○	· SPS 조치 적용 및 발전 관련 자문 · 국제포럼 의제, 입장, 이슈 컨설팅 · 기술 협력 프로그램 조정 · WTO SPS 협정 이행 관련 이해 제고 · 양국 검역 문제 검토 · 분쟁 협의
	대만	×	×	×	×
	ASEAN	×	×	×	×
	뉴질랜드	○	WTO SPS 협정, 제품준 기초	○	· 작업계획 설정, 감독, 재검토 · 실무 기술그룹 설치 · 이행안의 발의, 개발, 재검토 및 수정 · 정보교환 · 국제 이슈 조정 · 양자간 이슈 협의

은 정보교류, 국제적 논의에서의 협력, 문제(분쟁) 발생 시 협의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검역조치의 강화 또는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으며, 위원회를 통한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칠레 FTA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서 WTO SPS 규정 준수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의 문제는 실무위원회 등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온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뉴질랜드와의 SPS 협정은 이행약속에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개념을 도입할 것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협상 시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주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회원국은 자국법에 따라 지리적 근원에 대한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1.1. 중국 · 칠레

지리적 표시는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으며, 양국이 합의한 품목에 적용된다(협정문 제10조). 중국은 협정문 부속서 2A에 지리적 표시 품목을 명기하고 있다. 중국의 지리적 표시 품목은 Shaoxing Wine과 Anxi Tieguanyin(tea) 두 개다. 칠레의 지리적 표시 상품은 협정문 부속서 2B에 기재된 Chilean Pisco 한 개다.

1.2. 중국 · 대만

지리적 표시 관련 협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 중국 · 아세안

지리적 표시 관련 협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 중국 · 뉴질랜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이를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협정문 제159조).

1.5. 협상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는 한 · 칠레 FTA와 한 · EU FTA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 · EFTA FTA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표시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공중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부정경쟁(각 당사국이 각자 정의할 수 있음)을 구성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입법수단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협정의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후 지리적 표시 상세 보호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³⁰

³⁰ 한 · EFTA FTA Annex XIII 제5조.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지리적 표시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WTO TRIPS 협정을 준용하되 지리적 표시 해당 품목을 확대하여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류, 차, 곡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지리적 표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표 5-1. 지리적 표시 요약

		협정포함	WTO협정+a	품목
중국	칠레	○	WTO TRIPS 협정	· 중국: Shaoxing Wine, Anxi Tieguanyin(tea) · 칠레: Chilian Pisco
	대만	×	×	×
	ASEAN	×	×	×
	뉴질랜드	×	WTO TRIPS 협정	×

2. 농산물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2.1. 중국·칠레

WTO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및 재도입 방지에 협력하고,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협정문 제12조). 수출보조금의 범위는 WTO 협정문 제1조 e항 그리고 제9조가 정한 것으로 한다.

2.2. 중국 · 대만

기본협정문 제3조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내용으로 비관세조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관련 협정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2.3. 중국 · 아세안

기본협정문 제3조와 상품무역협정문 제7조에서는 보조 및 반보조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WTO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관련 협정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2.4. 중국 · 뉴질랜드

WTO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및 재도입 방지에 협력하고,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협정문 제10조). 이때 수출보조금의 범위는 WTO 협정문 (Agreement on Agriculture) 제1조 e항에 따른다.

2.5. 협상에 대한 시사점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WTO 농업협정 수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협상 대상국의 성격에 따라서는 수출보조금, 수출세, 수출금지 또는 제한 등에 대하여 품목 또는 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 등을 협정 당사국 사이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표 5-2. 수출보조 요약

		협정 포함	WTO 협정과의 관계	주요내용
중 국	칠레	○	WTO 협정문	·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및 재도입 방지 협력 · 양국 간의 수출보조금 도입이나 유지 않지 않기로 합의
	대만	×	×	×
	ASEAN	×	WTO 협정문	· GATT 협정문에 따르기로 함
	뉴질랜드	○	WTO 협정문	·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및 재도입 방지 협력

3. 농산물의 범위

농산물의 정의와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FTA 협정에서는 대부분 WTO의 상품 분류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3.1. 중국 · 칠레

양국 간의 협정에서 농산물의 범위는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협정 부속서 1에서 정한 수산물을 제외한 HS1류부터 24류, HS290543(만니톨), 290544(소르비톨), 3301(정유), 3501에서 3505까지(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및 그루우), 380910(전분질), 382360(소르비톨), 4101부터 4103까지(원

피와 가죽), 4301(생모피), 5001부터 5003까지(생사와 견웨이스트), 5101부터 5103(양모와 동물의 털), 5201부터 5203까지(원면, 면웨이스트), 5301(천연아마), 5302(천연대마) 등이 포함된다.

3.2. 중국 · 대만

농산물의 범위에 관한 협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3. 중국 · 아세안

농산물의 범위에 관한 협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4. 중국 · 뉴질랜드

양국 간의 협정에서 농산물의 범위는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협정 부속서 1에서 정한 수산물을 제외한 HS1류부터 24류, HS290543(만니톨), 290544(소르비톨), 3301(정유), 3501에서 3505까지(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및 그루우), 380910(전분질), 382360(소르비톨), 4101부터 4103까지(원피와 가죽), 4301(생모피), 5001부터 5003까지(생사와 견웨이스트), 5101부터 5103(양모와 동물의 털), 5201부터 5203까지(원면, 면웨이스트), 5301(천연아마), 5302(천연대마) 등이 포함된다.

3.5.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부분의 FTA 협정은 WTO 농산물 협정에서 정한 농산물의 범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관련된 특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경우 농산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관련 보조금, 수출입 규제, 특별취급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4. 농업협력

4.1. 중국·칠레

양국은 협력 분야를 경제(제105조), 연구 및 과학/기술(제106조), 교육(제107조), 노동, 사회보장, 환경(제108조), 중소기업(제109조), 문화(제110조), 지적재산권(제111조), 투자촉진(제112조), 광업 및 산업(제113조)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협력 관련 협정이나 합의에 기초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정보교류, 인적교류, 협력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 교역, 농업 투자, 농업분야 기술협력이나 인적 교류, 교육·훈련 등은 제105조에서 제113조에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2. 중국·대만

양국은 협력분야를 (1) 지적재산권 보호와 협력, (2) 금융협력, (3) 무역 촉진 및 무역 편리화, (4) 해관협력, (5) 전자 비즈니스 협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협력은 쌍방의 산업협력의 배치와 중점 분야를

연구하고 쌍방의 중대항목 협력을 도모하며, 쌍방의 산업협력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협조한다. 특히 쌍방 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고 쌍방의 경제무역 단체의 업무기구 공동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 교역, 농업 투자, 농업분야 기술협력이나 인적 교류, 교육·훈련 등은 제6조에서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3. 중국 · ASEAN

중국과 ASEAN은 협력분야를 농업,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개발, 투자 그리고 메콩강 주변 개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은 은행업, 금융, 관광, 산업협력, 수송, 원거리통신,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환경, 생명과학, 어업, 임업 및 임산물, 광업, 에너지 그리고 지역개발까지 포함된다. 중국과 ASEAN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상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 분야(과표를 표준화, TBT, 관세), 중소기업경쟁, 전자상거래, 능력배양, 기술 이전 등도 포함시킨다. 신규 ASEAN 국가들의 경제구조를 정비하고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의 증대를 위하여 중국과 ASEAN은 능력배양 프로그램과 기술지원에 합의 하였다(제7조).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과 최종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제8조).

4.4. 중국 · 뉴질랜드

양국은 협력 분야를 경제(제175조), 중소기업(제176조), 노동, 사회보장, 환경(제177조)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분야의 협력은 뉴질랜드 · 중국간 무역 및 경제협력 기조(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등과 같은 기존의 협력 관련 협정이나 합의에 기초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정보교류, 인적교류, 협력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 교역, 농업 투자, 농업분야 기술협력이나 인적 교류, 교육·훈련 등은 제175조에서 제177조에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5. 협상에 대한 시사점

농업 분야 협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ASEAN과의 협정에 농업개발, 메콩강 개발 등의 분야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중국은 기타 국가와의 협정에서 농업 분야 협력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5-3. 협력분야 요약

		협정 포함	WTO 협정과 의 관계	주요내용
중 국	칠레	○	×	· 경제, 연구 및 과학/기술, 교육, 노동 등 · 농업관련 내용은 없으나 제105조 및 113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대만	○	×	· 농업관련 내용은 없으나 제6조에서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ASEAN	○	×	· 농업,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개발, 투자, 메콩강 주변 개발 등 ·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 협의되지 않았고 최종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음
	뉴질랜드	○	×	· 농업관련 내용은 없으나 제175조, 제177조에서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은 상호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 대상국의 성격에 따라 농촌발전, 농업기술, 농업정책 등 상호 보완적인 분야를 결정하여 시장개방 효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WTO 제3조가 정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해 자국산과 같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GATT 제3조의 내국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계약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 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과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계약당사자 영토의상품은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의 부과대상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입 또는 국내상품에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과징금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에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에 기초

하지 않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상품무역 관련 내국민대우는 GATT 1994 제3조를 따르는 것으로 한 경우가 많다.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내국민대우의 예외 등은 규정되지 않았다.

5.1. 중국 · 칠레

상품무역 관련 내국민대우는 ‘협정문 3장 제7조에서 GATT 1994 제3조에 의한 내국민대우를 따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GATT 1994 내국민대우 조항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내국민대우의 예외 등은 규정되지 않았다.

5.2. 중국 · 대만

내국민대우 분야는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5.3. 중국 · ASEAN

내국민대우 분야는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5.4. 중국 · 뉴질랜드

협정문 3장 제6조에서 GATT 1994 제3조에 의한 내국민 대우를 따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내국민대우의 예외 등은 규정되지 않았다.

5.5. 협상에 대한 시사점

GATT 제3조 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내 생산 또는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내산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국내 수량 규칙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가 농식품 산업에 존재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 농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내국민대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양자 간 협상에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내국민대우의 예외 또는 지방정부까지의 확대 방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ATT 제3조가 체약 당사국의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 등 하부조직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중국·칠레 FTA는 GATT 제3조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민대우의 예외 조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 5-4. 내국민대우 요약

		협정 포함	WTO 협정과 관계	주요내용
중 국	칠레	○	GATT 1994 제3조	·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내국민대우의 예외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대만	×	×	×
	ASEAN	×	×	×
	뉴질랜드	○	GATT 1994 제3조	·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내국민대우의 예외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6. 정부조달

GATT 1947에서는 정부조달을 규율하는 요건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제17조 2항). 그러나 도쿄 라운드에서 정부조달에 대한 협정(정부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이 채택되어(1979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국만 가입하는 복수국간협정이 되었다. 당시 가입국은 23개국으로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이 협정의 개정 협상이 진행되어(1984~86년) ‘정부조달협정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1988년부터 발효되었다. UR 협상에서는 개정의정서보다 정부조달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WTO 정부조달협정(부속서 4의 복수국간 협정)이 채택되었다. 한국을 비롯하여 참여국이 증가하였다.

WTO 협정에서 조달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적용 사업의 조달계약 하한선은 각 당사국들이 분야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내국민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GATT 1947과 크게 다른 점이다.

중국은 정부조달 관련 협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정부조달 부문의 규정유형은 WTO 정부조달 규정(GPA)을 준용한 유형(한·EFTA FTA, 한·싱가포르 FTA)과 원칙적으로 GPA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추가적 의무를 설정한 유형(한·미 FTA, 한·EU FTA)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중국, 일본, 터키 등 향후 협상 대상국들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이러한 추가적 규율들을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은 WTO 협상에서도 일부 회원국들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FTA 협상에서도 정부조달 분야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조달 협정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대상품목을 제한하고 적용 대상 조달계약 기준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산지 기준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

조달 분야에 농산물을 포함시킬 경우 보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기준액을 상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WTO보다 개방폭을 확대한다는 FTA 목적을 고려하면 기준액의 하향 설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타 분야와의 절충을 고려할 수도 있다.

표 5-5. 정부조달 요약

		협정 포함	WTO 협정과 관계	주요내용
중국	칠레	×	×	×
	대만	×	×	×
	ASEAN	×	×	×
	뉴질랜드	×	×	×

7. 수입 및 수출 제한

중국은 ASEAN과의 협정에서 상품무역협정문 제8조에 WTO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협정대상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수량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협정대상국 가운데 WTO 회원국이 아닌 경우 상품무역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3년(베트남은 4년) 후 또는 WTO 가입 시 양허한 내용에 근거하여 수량제한을 폐지하되 2가지 경우 중 시간이 앞선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대만, 뉴질랜드, 칠레 등과의 협정에 수입 및 수출제한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맺은 FTA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교역에 대한 장을 두고 그 장에서 수량제한금지 원칙 규정을 두어 농산물에도 수량제한금지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³¹ 이러한 원칙하에

³¹ 한·칠레 FTA 제3.9조, 한·싱가폴 FTA 제3.8조, 한·아세안 FTA 상품교역협정 제8조 1항, 한·인도 FTA 제2.6조(비관세조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GATT 제11조상의 예외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EFTA와 맺은 FTA의 경우에는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 수량제한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EFTA의 각 회원국과 양자적으로 농업협정을 별도로 맺고 있는데, 그 협정들에서 수량제한금지 원칙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WTO 농업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WTO 농업협정의 관세화(tariffication) 원칙에 따라 UR시 합의되지 않은 어떠한 수량제한도 금지되는 셈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수입 제한 조치를 FTA 협정문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5-6. 수출/수입제한 요약

		협정 포함	WTO 협정과의 관계	주요내용
중 국	칠레	×	×	×
	대만	×	×	×
	ASEAN	○	WTO 규정	• WTO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 조치 실시 금지 • WTO 회원국이 아닌 경우 협정 발효 이후 3년(베트남 4년) 후 또는 WTO 가입 시 양허한 내용 중 시간이 앞선 것을 기준으로 폐지
	뉴질랜드	×	×	×

비관세조치에는 수량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한·미 FTA 제2.8조 1항, 한·EU FTA 제29조.

참고 문헌

- 김영춘, 2005. 원산지제도의 쟁점과 대응 방향. 관세무역정책자료집 제1호. 관세무역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11. 한·일 및 한·중 FTA 분야별 이슈 점검.
- 방호경, 2005. FTA 시대에서의 원산지협정의 바람직한 방향. 관세무역정책자료집 제1호, 관세무역연구원.
- 법무부, 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 송송이, 2005. 5.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무역협회. 무역조사보고서 2006-06.
- 양천호, 2005.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관세무역정책자료집 제1호. 관세무역연구원.
- 어명근 외, 2003. 12.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6. 4. 「한·중 FTA 영향분석」. C2006-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중호, 2005. 6. 중·아세안 FTA 상품양허 주요 내용.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_____, 2005. 7. 중·ASEAN FTA 상품양허 내용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허덕진, 2005. 2. 중국·ASEAN FTA의 주요 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정인교 외, 2007. 6. 「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 연구총서 07-02. 정석물류통상연구원.
- 최세균 외, 2009. 3.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 추진 현황과 전망」. P1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6. 4.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연구 및 D/B 구축」. C200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6. 4. 「FTA 추진절차 및 사례 분석」. C2006-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3. 9. 「동식물검역 효율화 방안 및 WTO/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농림부.

<<http://www.bilaterals.org>>.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http://www.fta.go.kr>>.

연구보고 R626-1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중국의 FTA 사례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11.

발 행 2010. 11.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전화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SBN 978-89-6013-187-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